

재정
성과
평가
동향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 2020년 가을(Vol. 7 No. 3) |

목 차

»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1. 한국

-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03
- 2020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06
- 2020년 기금평가 결과 08
-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14

2. 미국

- 대통령 국정과제(PMA) 기술 의제, COVID-19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원 18
- 부적정 지출: 에너지부의 위험평가 및 보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22

3. 호주

-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 *Newsletter*, No. 59; 60 36

4. 뉴질랜드

- 공공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43
- 2020년 예산과 웰빙접근법 47

5. IMF	
• COVID-19 대응을 위한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준비	54
6. World Bank	
• COVID-19 대응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58
7. OECD	
• 아르헨티나의 예산 제도	64

» II. 국가계약 동향 및 연구

1. 국가계약 동향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71
• 계약제도 혁신 TF 출범(kick-off) 회의 개최	74
2. 국가계약 연구 동향	
• 공공조달개혁(Reforming Public Procurement).....	77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CONTENTS

1. 한국
2. 미국
3. 호주
4. 뉴질랜드
5. IMF
6. World Bank
7. OECD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1. 한국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 2020. 5. 6.,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해 2020년 3월 24일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
 - 편성지침: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사업유형 및 비용 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 급증에 따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강화
 -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 규모 축소에 집중된 반면, 이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으로의 재투자로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
 -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

-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이번 세부지침에 명시

- ◆ (보조사업)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 규모 등을 재검토(6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 검토
 -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
 -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 추진
 - *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 시 신규사업에 준하여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 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 추진
- ◆ (출연사업)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 통폐합 및 지출 효율화 검토(500여개 사업 중점 검토)
 -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
 -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 예)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 1% 이내 감액,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홍보성 경비 등 구조조정
 - ** 사업출연금에 포함된 운영비를 기관운영비로 통합관리

■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
-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 선별
-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를 차등 지원(설계비 효율 차등화)
 -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

-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강화
 - 플랫폼 경제의 핵심 분야인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

■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 (신규 문화시설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
 -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유도
- (신규 정보화사업) 사전 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 (기획평가관리비 신설)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 기관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투명성도 제고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투자역력 확보 및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 -」, 2020. 5. 6.

(요약·정리: 김창민 선임연구원)

2020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2020. 5. 8.,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5월 8일(금)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논의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020. 5. 8.(금) 10:00~11:30, 서울청사 대회의실(19층)
- ◆ **(구성)** 위원장(기재부 제2차관), 정부위원(12), 민간위원(12)
 - 정부: 기재부 차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중기부 등
 - 민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대표 등 보조사업 관련 민간전문가
- ◆ **(안건)**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

- 구윤철 차관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언급
 - 구조조정 비율(사업 수 기준): ('19) 26.3% → ('20) 36.1%, +9.8%p

-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사업 실효성을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평가

-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 평가결과, 평가대상 241개 사업 중 36.1% 수준인 87개 사업에 대하여 약 0.3조원 규모를 감축하기로 함

- 평가대상: 26개 부처 241개 사업, 총 8.6조원('20년 예산 기준)
- 지원 필요성(타 사업과 유사·중복, 목표 기달성 등)이 낮거나, 집행 또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

〈표 1〉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구분	2020년 예산		2021~2023년(3년간) 감축 규모(B)
	사업 수	예산(A)	
폐지	14	1,579	△1,579
통폐합	5	527	△527
감축	68	20,255	△1,265
사업방식 변경	130	54,054	-
정상 추진	24	9,112	-
합계	241	85,526	△3,37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5. 8.

- 평가결과는 2021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며,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효율성 낮은 보조사업 3년간 0.3조 원 감축 -」, 2020. 5. 8.

(요약·정리: 김창민 선임연구원)

2020년 기금평가 결과

- 2020. 5. 26.,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
 -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1~5월간 평가 →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5월 28일)

<기금평가제도 개요>

- (기금평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구성
 - (존치평가)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
 - * 매년 전체 기금(67개)의 1/3씩 평가 →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기금
 - (자산운용평가)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평가**
 - **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3개)과 격년 평가 기금(24개) →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시기금 등 45개 기금

1. 2020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6년 1월부터)
 - **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정보통신진흥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 45%)
 -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제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 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
 - * 예) 논문 등재 실적 → 사업화 실적 등

-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의 6개 사업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 사업〉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용자 방식을 이자 보전으로 전환하여 피해업종 지원 확대
- (4대강 수계기금)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사업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 구축

- 재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 중기 재정 소요 대비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7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하고, 과소한 1개 기금**은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

*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문화재보호기금

2. 2019회계연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전년 수준(71.5점)을 유지

〈표 1〉 자산운용평가 결과

(단위: 개)

등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총 44개	4	10	24	5	0	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5. 26.

-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

-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을 활용하여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

* 공무원연금: 8.3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1.15%

-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은 불필요한 현금성 자산 보유를 최소화하고, 가용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우수' 등급으로 평가
 -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하여 '아주 미흡' 등급으로 평가
- 상기 44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
- *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2017년~)
- 글로벌 증시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호한 운용 성과(수익률: 11.34%, 수익금: 73.4조 원)를 달성하였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으로 인해 계량, 비계량 평가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최근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투자 시계를 반영한 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

3. 향후 추진계획

- 기금평가 결과는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
- * (「국가재정법」 제82조 제3항)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존치평가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
 자산운용평가 → 공공기관 경영평가(5점)에 반영 및 평가결과 상·하위 1/3 기금 대해 운영비 0.5% 증액·삭감

첨부 1 2020년 기금 평가 대상

■ (존치평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기금*

* 매년 전체 기금의 1/3씩 평가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무역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화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 (자산운용평가)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5개 기금*

*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3개)과 격년으로 평가하는 기금(24개)

- 국민연금은 2016 회계연도부터 별도 평가지침으로 평가 실시

〈표 1〉 자산운용평가 대상 기금

구분		기금명
매년 평가 (21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18개)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자금 규모 1조원 이상(3개)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택도시기금
격년 평가(24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보훈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2020년 평가기금(45개)		
전년도 평가 기금(18개)		-
평가 제외(4개)	계정성 기금(4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전체 기금(67개)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5. 26.

첨부 2 2020년 기금 존치평가 결과: 사업의 적정성

기금명	사업명	(단위: 억원)		평가 결과	평가 내용
		'19년 실적	'20년 예산		
전력산업기반기금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R&D)	43	51	폐지 (일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 이후 사업 종료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융자지원	4,355	5,500	지출 구조 조정	융자 방식(온렌딩 대출)을 이자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지원 수혜자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662	762	지출 구조 조정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단위사업)	577	560	지출 구조 조정	기금목적(상수원 수질개선) 및 시설운영 주체(지자체)를 고려하여 지자체와 적정 비용분담 비율 검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591	1,511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213	195		
한강수계관리기금		1,927	2,238		
금강수계관리기금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200	274	제도개선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 매수 시,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 체계 구축 필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24	491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305	322		
한강수계관리기금		1,283	1,094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지원	18	8	제도개선	해외 영화사에 대한 경비 직접보전 방식을 로케이션 DB 구축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급여	161	164	제도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의 지출액에 최근 상황을 반영할 필요
언론진흥기금	뉴스미디어 진흥	107	111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은 마무리 단계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지원에 주력하여 뉴스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 제고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5. 26.

첨부 3 2019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등급	구분	기금명
탁월 (4개)	사회보험성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금융성	-
	사업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10개)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금융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업성	국제교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양호 (24개)	사회보험성	-
	금융성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성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양성평등기금, 언론진흥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응급의료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보통 (5개)	사회보험성	-
	금융성	-
	사업성	군인복지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미흡 (0개)	사회보험성	-
	금융성	-
	사업성	-
아주 미흡 (1개)	사회보험성	-
	금융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성	-

주: 국민연금은 별도의 평가지침으로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5. 26.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년 기금평가 결과」, 2020. 5. 26.

(요약·정리: 김창민 선임연구원)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 2020. 6. 15., 기획재정부 -

-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
 - 지난 1년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 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
 - * 사업제안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판단
 -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성범죄 대응, 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40건의 사업을 발굴
 -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DNA+Big3 등
 - 특히 올해에는 제안자·부처·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숙성을 통해 사업 수가 전년 대비 63%, 요구금액이 100% 증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표 1〉 국민참여예산 요구 규모

(단위: 개, 억원)

구분	2021		2020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계	156	5,323	96	2,663
제안형	116	4,035	83	1,921
토론형	40	1,288	13	74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6. 15.

- 요구된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주요 특징
 - 성범죄 예방, 재난·안전 관리, 국민불편 해소 등 사회적 이슈 및 생활밀착형 사업을 다수 발굴
 - 디지털성범죄 대응,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드론 이용 산림·해양 감시체계 구축,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 면제 민원 전산화,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 청소년, 다문화·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

- 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씬터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중도입국 자녀 코디네이터 운영, 직장 내 갑질피해 지원체계 구축
 - 미래 먹거리 발굴,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요구
 - (혁신성장)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설명 가능한 의료 AI 기술개발
 - (창업·기업지원) 공공데이터 AI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 식품·외식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
-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참여단은 일반 국민 2천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400→2천여명)하여 국민 대표성을 강화
 - (사업 선호도 조사) 예산국민참여단 논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친 사업선호도 조사를 시행
 - 1차 투표(6. 26~28.): 모든 사업에 대해 5점 척도 선호도 조사
 - 2차 투표(7. 3~5.): 참여단 개인별 선호도가 높은 일정 수의 사업을 선택
 - (정부예산안 편성) 참여단 선호도 조사결과와 더불어 개별사업의 파급효과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

참고 1 2021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사업 총괄표

(단위: 개, 억원)

분류	사업 수	금액	주요 사업
총 계	156	5,323	
① 국민생활 개선	75	1,722	
안전한 삶 지원	24	6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60)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21) • 드론 이용 산림·해양감시체계 구축(61)
건강한 삶 지원	10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 면제 민원 전산화 시스템 구축(6) • 건설현장근로자 건강지킴이(39)
쾌적한 삶 지원	18	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팩 회수·재사용 체계 구축(30) • 휴어기 어선활용 해양쓰레기 수거(8) • 빈집정비사업 응재(40)
생활불편 해소	9	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메신저(챗봇) 등을 활용한 소비자 실시간 상담시스템 구축(1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스마트 응자 신청(29)
행정서비스 고도화	14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AI) 대국민 법률서비스(7) • 자생식물종자 정보구축(40) • 초중고 발명교육교실 현대화(66)
②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45	1,799	
(위기)청소년 지원	13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116) • 쉼터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38)
경단녀 경제활동 지원	7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여성인턴 지원 확대(221) • 경단녀 대상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등(61)
1인 가구 지원	5	3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문화로 안녕(30) • 1인 가구 사고·질병 시 돌봄 등 생활지원(168)
저소득층 지원	4	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23) •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확대 등(39) • 저소득 취약계층 수산식품 제공(52)
다문화 가정 지원	4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자녀 코디네이터 운영(44) • 외국인근로자 상호 문화교류(10)
기타 취약계층 지원	12	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갑질피해 지원체계 구축(12) • 유공상이자 교통복지카드 추가 도입 및 전국 호환 인프라 구축(87)
③ 경제활력 제고	36	1,802	
혁신성장 지원	11	4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 가능한 의료 AI 개발(28) •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화 지원(90)
창업 및 기업경쟁력 제고	25	1,3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AI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150) • 식품·외식자원공유 플랫폼 구축(1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6. 15.

참고 2 2021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운영 일정

<p>운영 준비 (~'20. 1. 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민참여예산 운영지침」 부처 통보('20. 1. 14, 2. 20, 4. 22) <input type="checkbox"/> 참여예산 홈페이지 리뉴얼('20. 1. 15)
<p>사업제안 · 숙성 ('20. 1. 15~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업제안 집중 접수('20. 1. 15~3. 31) * 3월 31일 이후 접수 사업은 '21년에 '22년도 예산안 반영 시 검토 <input type="checkbox"/>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숙성('20. 3~5월) * 부처 검토(3~4월), 지원협의회 숙성회의(5월) <input type="checkbox"/>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이슈 공모('20. 2. 1~2. 28) * 토론이슈 확정(3. 15), 온라인토론(3. 15~4. 15), 현장토론회(5월) <input type="checkbox"/>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20. 5. 31)
<p>참여단 논의 ('20. 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제3기 예산국민참여단 구성 등('20. 5~6월) * 참여단 구성(5월), 사전교육 · 공감투표 실시(5~6월) <input type="checkbox"/> 예산국민참여단 숙의('20. 6~7월) * 온라인교육: 참여예산사업 설명 PPT 영상(6. 15~25), 사업별 질의 · 응답 영상(6. 29~7. 2)
<p>선호도 조사 ('20. 6~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20. 6~7월) * (잠정): 1차(6. 26~28), 2차(7. 3~5)
<p>정부예산안 반영 ('20.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20. 6~8월) <input type="checkbox"/>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20. 8월) <input type="checkbox"/>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20. 8월)
<p>국회 예산안 심의 · 확정 ('20. 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 · 확정 ('20. 11~12월)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 2000여명의 예산국민참여단 온라인 사업 논의 및 선호도 조사 추진 -」, 2020. 6. 15.

(요약 · 정리: 김창민 선임연구원)

2. 미국

대통령 국정과제(PMA) 기술 의제, COVID-19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원

- 2020. 5., 미국 [performance.gov](https://www.performance.gov) -

- 본고는 대통령 국정과제 기술 의제(PMA Tech Initiatives)가 COVID-19 전염병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연방 최고 정보관리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s, 이하 CIO)가 작성한 뉴스레터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대통령 국정과제(PMA)가 COVID-19 전염병 대응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연속 간행물 중 첫 번째 뉴스레터에 해당함

- 많은 연방 기관들은 COVID-19의 세계적인 유행에 대응하여 디지털화된 환경을 신속하게 수용하여 해당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연방 기관들의 대규모 인력을 모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택근무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임

- 각 연방 기관들은 공공서비스 제공 시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함
 - 현재 연방 기관들은 역사상 가장 수준 높은 재택근무 환경을 운영하고 있음
 - 가상 플랫폼(virtual platform)과 디지털 서명의 사용 빈도가 높아짐
 - 이러한 새로운 상황이 생소했던 연방 기관 직원들은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하여 화상회의와 같은 온라인 툴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됨

-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이유로는 현대 기술에 대한 투자, 활용성 높은 상업 프로그램, 향상된 데이터 관리 능력, 자동화 등을 들 수 있으며, PMA는 아래와 같은 탄력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함
 - 상시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노력(Response Efforts to Embrace Full-Time Telework)
 -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는 납세자들에게 COVID-19 생활 구호 자금

(Economic Impact Payment) 지급 현황을 알리기 위해 ‘Get My Payment’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며, 2020년 4월 15일 배포 후 현재까지 3억 6,800만명 이상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음

[그림 1] Get My Payment 어플리케이션

자료: IRS 홈페이지, <https://sa.www4.irs.gov/irfof-wmsp/login>, 검색일자: 2020. 7. 21.

[그림 2] 생활 구호 자금 지급 예시

자료: TurboTax 홈페이지, <https://ttlc.intuit.com/>, 검색일자: 2020. 7. 21.

- [그림 1]과 [그림 2]는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Get My Payment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예시로, [그림 1]과 같이 본인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그림 2]처럼 본인의 COVID-19 생활 구호 자금 지급 현황을 알려줌
-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기존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지원 툴을 확대하여 COVID-19 상해 재해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함
- 2020년 5월 1일까지, 중소기업청은 COVID-19에 영향을 받은 대출자들의 급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달러 이상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을 승인함
- 업무 집중력 유지를 위한 대응 노력(Response Efforts to Maintain Mission)
 -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중앙조달기관(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주택도시개발청(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원자력 규제 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95% 이상의 인원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음
 -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5일 동안 개인 신분 인증(Personal Identity Verification, PIV), 노트북 발급,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등을 전면 제한
 -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신규 직원을 위한 신분증, 인증서, 필수 고용 훈련 등을 가상으로 구현하였으며, IT 서비스 데스크를 원격으로 운영하여 IT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자택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활용을 위한 대응 노력(Response Efforts to Leverage Data)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HHS)는 200개 이상의 데이터 셋으로 이루어진 HHS PROTECT 프로그램을 9일만에 구축하여 백악관의 COVID-19 TF 구성원들이 정책 옵션을 분석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의 확산과 영향, 행동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여러 연방 기관들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COVID-19 대응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통보하고 있음
 - 항공우주국(NASA),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민간 부문 기업([그림 3] 참고)으로 구성된 코로나-19 HPC 컨소시엄(COVID-19 High-Performance Computing Consortium)은 매우 높은 공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림 3] 코로나-19 HPC 컨소시엄 참여 그룹



자료: 코로나-19 HPC 컨소시엄 홈페이지, <https://covid19-hpc-consortium.org/who-we-are/>, 검색일자: 2020. 7. 21.

- 평상시나 위급 시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는 노동력으로, 이번 COVID-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성공 비결은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임
 -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 성과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COVID-19 이후에도 오래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위기는 지나가겠지만 지난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는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함

참고자료

미국 performance.gov, *PMA Tech Initiatives Support Rapid Response to COVID-19*, 2020. 5. 7., <https://www.performance.gov/PMA-tech-initiatives-support-rapid-response-to-COVID19/>, 검색일자: 2020. 6. 26

(작성자: 박정민 연구원)

부적정 지출: 에너지부의 위험평가 및 보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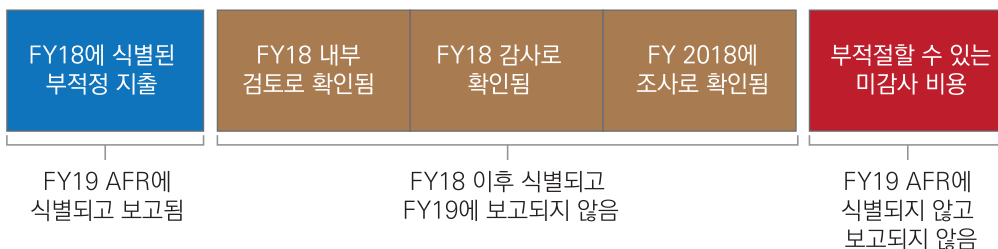
- 2020. 6., 미국 GAO -

■ 본고는 미국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가 의회위원회(Congressional Committees)에 제출한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부적정 지출(Improper payments) 관련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의 위험평가 및 보고의 신뢰성과 정확성 개선을 위한 GAO의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 GAO의 시사점

- GAO는 에너지부(DOE)가 보고한 2015~2019 회계연도 기관 재무보고서(Agency Financial Reports, 이하 AFR)의 부적정 지출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함
 - 부적정 지출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은 부적정 지출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효한 추정치를 보고해야 함
 - 에너지부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식별된 실제 부적정 지출에 대해 보고하였음
 - 예를 들어 에너지부는 2019 회계연도 기관 재무보고서에서 초과 지출의 0.1%보다 적은 3,600달러의 부적정 지출을 보고하였지만, 기관 재무보고서 발행 후 완료된 검토와 감사를 통해 더 많은 부적정 지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음([그림 1] 참조)

[그림 1] 에너지부(DOE) 2018 회계연도 부적정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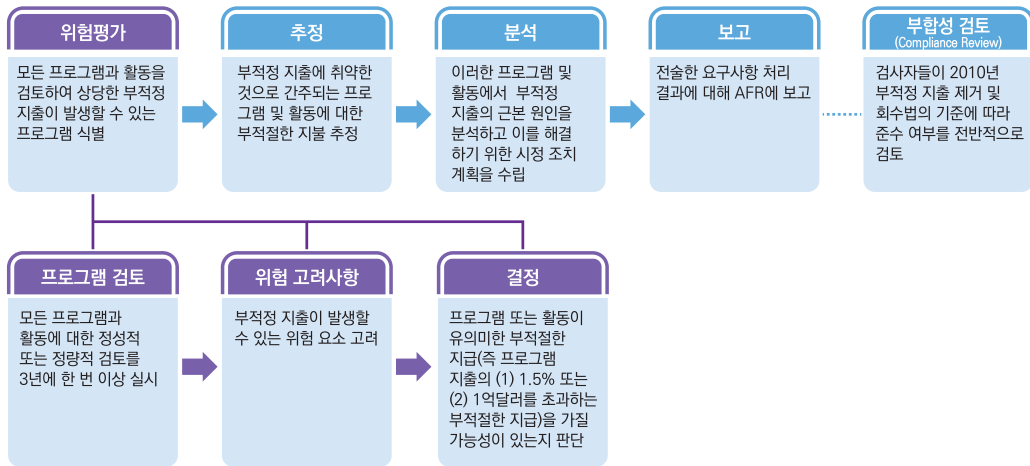
자료: GAO, GAO-20-442,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검색일자: 2020. 6. 25.

- 에너지부는 2019년 9월 당시 2018 회계연도 지출 385억달러 중 238억달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부적정 지출 금액을 수백만달러 증가시킬 수 있음
 - 에너지부는 2017년 감사를 바탕으로 2010 회계연도에 3,400만달러의 부적정 지출을 확인한 바 있음
- 에너지부는 2018 회계연도 위험평가에서 부적정 지출에 대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GAO는 에너지부가 제시한 위험평가에서 부적정 지출에 대한 위험이 낮다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GAO는 에너지부가 부적정 지출을 고유위험(inherent risk)으로 식별하는 데 있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위험요인을 점수화하였을 때 점수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2. 부적정 지출에 대한 연방 요구사항

- 감사기간 동안의 부적정 지출과 관련된 주요 요건은 「부적정 지출 정보에 관한 법률(Improper Payments Information Act of 2002, 이하 IPIA)」과 OMB M-18-20 및 OMB Circular A-136에서 찾을 수 있음
 - 연방 기관은 IPIA와 OMB M-18-20의 지시에 따라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검토하여 부적정 지출에 취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파악(일반적인 위험평가 단계)
 - 위험평가, OMB 또는 법령에서 부적정 지출에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해 해당 기관은 통계적으로 유효한 부적정 지출 추정치를 개발하고, 부적정 지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정 조치를 개발해야 함
 - 상기 요구사항의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함
 - [그림 2]는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 수행의 주요 구성요소와 단계를 설명함
 - 위험평가, 프로그램 검토, 결정 단계는 모든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추정·분석·보고·부합성 검토(compliance review)는 부적정 지출에 취약한 기관에서만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단계임

[그림 2]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 수행의 주요 구성요소 분석 주요 단계



자료: GAO, GAO-20-442,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검색일자: 2020. 6. 25.

- IPIA는 모든 연방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해 적어도 3년에 한 번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부적정 지출에 취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식별하도록 요구함
 - OMB 지침에 따르면, 기관은 통계적 표본에 기초한 정량적 평가 또는 위험평가 설문지와 같은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검토해야 함

3. 에너지부 부적정 지출 보고 구조

- 에너지부의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이하 CFO) 15명은 에너지부 계약 담당자와 협력하여 현장의 활동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최고재무책임자 사무국(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이하 OCFO)은 부적정 지출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도움
 - OCFO는 OMB M-18-20에서 규정한 부적정 지출 보고 및 회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에너지부의 지침을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위험평가와 부적정 지출 및 회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템플릿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
 - 이 템플릿은 에너지부 부처 전체의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 및 보고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함
 - 템플릿 외에 지출 보고 사이트(payment reporting sites, 5. 일부 에너지부 사이트의 부적정 지출 보고 누락 참고)는 부적정 지출에 대한 정보, 위험평가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인

증서, 해당되는 경우 지급 회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OMB Circular A-136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파악한 지급 보고 사이트에서 보고된 부적절 지급 비율에 기초하여 전년도 부적절한 지급 금액을 선택적으로 보고하였음
- <표 1>은 2015에서 2019 회계연도까지 재무보고서에 보고된 에너지부 부적정 지출액과 관련 지출률을 나타냄

<표 1> 2015~2019 회계연도 에너지부 부적절 지출 사항

(단위: 백만달러, %)

보고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지출액	36,940.00	38,890.00	37,450.00	36,890.00	38,470.00
총 부적정 지출 금액	22.45	28.35	25.84	32.86	36.26
부적정 지출률	0.06	0.07	0.06	0.09	0.09

자료: GAO, GAO-20-442,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검색일자: 2020. 6. 25.

- 2012년부터 에너지부 감사관실(에너지부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이하 DOE OIG)은 에너지부가 매년 부적정 지출 정보 게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위험평가를 수행했다고 보고하였음

4. 에너지부 부적정 지출 식별과 회복에 대한 감사(audit)와 조사(investigation)

- 에너지부 감사관실과 타 연방기관 또는 외부감사기구는 정기적으로 발생 원가 감사(incurred cost audit)를 실시하고 에너지부의 원가보상계약(cost reimbursement contract)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발생 원가 감사의 목적은 발생 원가의 합리성, 회계원칙과 상황에 적용되는 원가회계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지, 또는 계약·법령·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 감사나 평가의 결과로 부적정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에너지부는 의문시되는 비용(questioned costs)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자와 협상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에너지부의 2019 회계연도 연간 지급 무결성 요건 및 지침(annual payment integrity requirements and guidance)에 따르면, 의문시되는 비용(questioned costs)은 계약 담당자에 의해 결정되기 전까지 부적정 지출로 간주되지 않음

- 에너지부 감사관실, 법무부, 기타 연방 기관 또한 조사를 통해 잠재적인 부적정 지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OIG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정 지출은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음
- OIG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부 부적정 지출은 정부 주도의 범죄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음
- OCFO 관계자들은 회수된 금액이 수수료나 벌금 때문에 원래 지급과 관련된 금전적 손실 금액과 상이할 수 있다고 밝힘
 - 「부적절 지출 척결 및 회수법(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이하 IPERIA)」은 기관들이 부적절 지급이 발생했는지 또는 회수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확인된 부적절 지급액을 보고하도록 요구함
- 에너지부는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부터 과거 연도의 부적정 지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 시작함
 -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서 2017 회계연도에 회수를 위해 발생한 9,269만달러의 전년도 부적정 지출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함
 - 201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서 2018 회계연도에 회수를 위해 발생한 1,418만달러의 전년도 부적정 지출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함

■ 정확하지 않은 2015~2019 재무보고서에 보고된 부적정 지출 금액

- 2015~2019 회계연도에 에너지부 재무보고서에 보고된 부적정 지출액은 일부 에너지부 지급 보고 사이트가 부적정 지출을 올바르게 식별·추적·보고하지 않아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5. 일부 에너지부 지출 보고 사이트의 부적정 지출 보고 누락

■ 에너지부에는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매년 에너지부 OCFO에 실제 부적정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48개의 지출 보고 사이트가 있음

- 8개 사이트는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이 중 4개는 연방법인(federal entities)이고 2개는 계약자(contractors)임
 - <표 2>는 48개의 지출 보고 사이트와 OCFO에 보고한 2017 회계연도 지출 및 부적정 지출 데이터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네 가지 유형의 연방 법인은 본사(headquarters), 에너지부 현장, 전력시장관리국(Power Marketing Administrations, 이하 PMA)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FERC)가 있음

- 두 가지 유형의 계약자는 경영 및 운영(management and operating, M&O) 계약자와 비 M&O 계약자가 있음

〈표 2〉 에너지부 2017 회계연도 지출 보고 사이트 48개 중 일부

(단위: 백만달러)

구분	에너지부 지급 사이트	사이트 유형	FY17 지출	FY17 현재 연도 부적정 지출	FY17 전년도 부적정 지출
연방 법인	Loan Accounting Team	Headquarter	275.0	-	-
	Chicago Office	에너지부 현장	1,038.6	3,211	0.479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298.5	0.448	-
	Southeastern Power Marketing Administration	PMA	46.7	0.003	-
계약자	Ames Laboratory	M&O 계약자	45.5	0.018	0.001
	Oak Ridge Associated Universities	비 M&O 계약자	394.6	0.362	-

자료: GAO, GAO-20-442,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검색일자: 2020. 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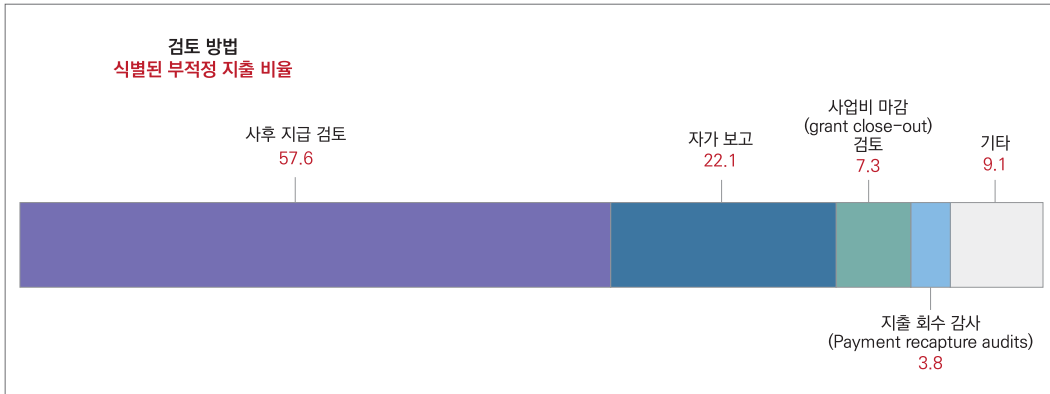
■ 에너지부 2017 회계연도 부적정 지출 추가 세부사항

- OCFO는 에너지부의 재무보고서에 보고 의무가 없었던 지급 보고 사이트의 부적정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도록 요구함
 - 세부사항에는 부적정 지출이 식별된 방법과 판단 이유가 포함됨
 - [그림 3]은 2017 회계연도 부적정 지출 검토 방법을 나타냄
 -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 회계연도의 부적정 지출의 대부분의 두 가지 방법은 사후 지급 검토(post-payment review)와 자가 보고(self-reporting)로, 각각 57.6%와 22.1%를 차지함
 - 에너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사이트는 지급 회수 감사(Payment recapture audits)를 통해 부적절 지급이 확인되었다고 잘못 보고했으며, 실제로 지급 회수 감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되었음
 - ‘기타’에는 2017 회계연도 부적정 지출액의 8.3%를 차지한 ‘기타 모니터링 활동·검토’가 포함되어 있으며, 1% 미만을 차지하는 국방 계약 감사(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contract Audits), 단일 감사 보고(Single Audit Reports), 계약 사업비 마감 검토(Contract Close-Out Reviews), 공개 보고서(Reports from the Public), 에너지부 일

반 감사·검토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3] 에너지부 2017 회계연도 부적정 지출 검토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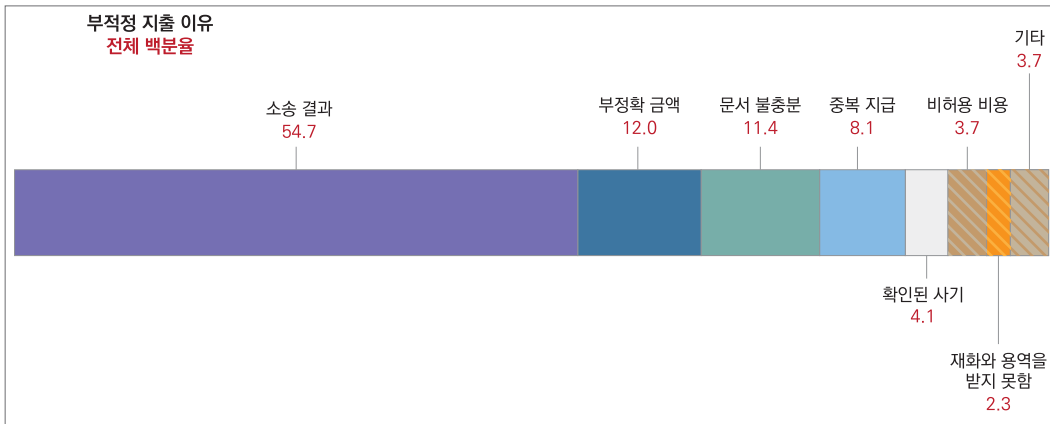


자료: GAO, GAO-20-442,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검색일자: 2020. 6. 25.

- [그림 4]는 2017 회계연도 부적정 지출 판단 이유가 소송의 결과 정산에 의한 것이 대다수 (54.7%)였던 것을 보여줌
 - ‘기타’에는 2017 회계연도에 확인된 부적정 지출액의 2% 미만을 차지한 기타, 법률 또는 부서 정책상 허용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자금, 부적격 수령, 부적격 재화와 용역, 매입할인 불이용 손실(Lost Discount)을 포함함

[그림 4] 에너지부 2017 회계연도에 확인된 총 부적정 지출 확정 근거

(단위: %)



자료: GAO, GAO-20-442,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검색일자: 2020. 6. 25.

- 지급 보고 사이트가 부적정 지출액을 정확히 식별,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2015~2019 회계연도 동안 에너지부의 재무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별된 지출 보고 사이트의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지출 보고 사이트의 부적정 지출 식별과 추적 프로세스가 항상 요구사항대로 정확하고 완전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였음

-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10개 사이트 중 3개 사이트에서 OCFO에 부적정 지출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됨
 - 한 사이트 관계자는 추후 송장(future invoice)을 조정함으로써 부적정 지출의 일부를 해결했다고 함
 - 이러한 경우 부적정 지출액을 추적하거나 OCFO에 보고하지 않았음
 - 송장 조정이 부적정 지출을 회수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추적하지 않는 것은 OCFO에 보고된 부적정 지출액을 과소 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함
 - 또 다른 사이트의 관계자들은 2017 회계연도 OCFO 부적정 지출 보고에 거의 100만달러를 실수로 포함시켰다고 전함
 - 의문시되는 비용(questioned costs)은 결정 전까지 부적절하다고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이 해당 사이트가 2017년 한 해 동안 부적정 지출액을 100만달러 가까이 과대 계상했다는 것을 의미함
 - 본 사이트는 2015 회계연도 보고에 과대지급액에서 과소지급액을 차감하여 부적정 지출액을 과소 계상함
 - 과소지급과 과대지급 모두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므로 차감보다는 합산하는 것이 정확하며, 관계자들은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 문제를 수정하였음
 - 세 번째 사이트의 관계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과소지급액을 면밀히 추적하지 않으며, 모든 과소지급금이 연간 부적정 지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했으며, 따라서 매년 부적정 지출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함

- 전년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당한 금액의 부적정 지출액의 식별
 - 에너지부는 각 회계연도가 끝난 후 또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부적정 지출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그림 5]는 부적정 지출의 유형과 재무보고서에 포함되는 범위를 나타냄

[그림 5] 에너지부 부적정 지출의 유형 및 재무보고서에 포함되는 범위

현재 연도에 포함된 부적정 지출		
유형	확인 방법과 기타 설명	예시
발생 회계연도에 확인된 부적정 지출	부적정 지출 발생 회계연도 말까지 확인된 부적정 지출	DOE는 2018 회계연도 AFR에서 2017 회계연도에 발생한 3,286만달러의 부적절한 지급액을 보고함
모든 연도에 포함되지 않은 부적절 지급액과 지출률		
유형	확인 방법과 기타 설명	예시
회계연도 종료 후 확인된 부적정 지출	회계연도 말에 발생하여 다음 회계연도 사후 지급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적정 지출	분기별 검토 완료 후, 한 지급 보고 사이트의 2016 회계연도 부적절 출장 지급이 해당 연도 이후 3만 5천달러(35%) 증가함
	향후 회계연도까지 판단되지 않은 감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절 지급액	2017년 외부감사에서 2010 회계연도 의문시되는 비용(questioned costs) 2억 8천만달러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3,400만달러가 2020 회계연도에 부적절하다고 간주됨
	향후 회계연도까지 판단되지 않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절 지급액	2017 회계연도에 판정된 조사 결과와 2001 회계연도와 2013 회계연도 사이에 계약자에게 지급된 부적절 지급액이 6,060만 달러인 것으로 확인됨
확인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DOE 부적정 지출	지급 보고 사이트 내부 문제로 인해 DOE의 OCF에 보고하지 않는 부적정 지출	한 지급 보고 사이트의 관계자는 송장(invoice)을 조정하여 부적절 지출금액의 일부를 해결했지만 OCF에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함
	감사되지 않은 비용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비용	2014 회계연도부터 2018년까지 24개 대형 계약업체에서 발생한 비용의 75% 이상(총 830억달러 이상)은 2019년 9월까지 감사를 받지 않음
	감사를 통해 확인된 해결되지 않은 비용은 향후 부적정 지출로 판단될 수 있음	감사를 통해 확인된 7억달러 가까운 의문 비용이 2019년 9월까지 해결되지 않았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지만, DOE는 수취인과의 협상이나 판결의 다른 측면으로 인해 부적절한 것으로 식별되지 않는 지급	DOE는 2009 회계연도에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으로 5억달러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킴. 이 회사는 대출보증 신청 시 허위 청구와 노력을 했고, 이후 파산을 선언해 대출금을 미지급 상태로 방치하였으나 DOE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 지급을 부적절 지급으로 판단하지 않았음

자료: GAO, GAO-20-442,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검색일자: 2020. 6. 25.

- 에너지부가 기관 재무보고서에 보고한 현 연도 부적정 지출액과 관련 지출률은 발생한 회계연도 이후에 발견된 모든 부적절한 지급액을 제외함
 - 예를 들어 에너지부는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서 3,286만달러의 보고 연도(2017 회계연도) 부적정 지출을 보고했으며, 관련 부적정 지출률은 0.09%였음
 -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는 2017 회계연도보다 일찍 발생한 9,269만달러의 부적정 지출을 보고했지만, 에너지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부적절 지급이 확인됨에 따라 후속적으로 증가된 부적절 지급액을 공개하지 않았음

6.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에너지부 2018 회계연도 위험평가

- 에너지부는 2018 회계연도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에서 부적정 지출에 대한 민감도를 낮게 평가하였지만, 위험평가 방법과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음

- 에너지부는 3년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 수행을 위한 절차를 분산화(decentralize)함
 - 2018 회계연도를 위해 에너지부는 각 지급 보고 사이트에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 템플릿을 개발하여 제공함
 - 에너지부는 모든 지급 보고 사이트에 IPIA의 7가지 위험 요소와 에너지부가 개발한 4가지 추가 위험 요소를 고려하도록 지시함
 - <표 3>은 현장 위험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에너지부 개발 위험 요소를 나타냄

<표 3> 2018 회계연도 부적절한 지출 위험평가에 사용한 추가 위험요소

구분	위험 요소
1	고유 위험(inherent risk)
2	OMB Circular A-123 평가 결과와 부적정 지출을 예방 및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내부 검토 결과
3	계약자(contractor) 지출 절차 관리 감독
4	의무(duty)와 책임(responsibility)의 적절한 분리

자료: GAO, GAO-20-442,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검색일자: 2020. 6. 25.

- 에너지부의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 템플릿에는 각 위험 요소의 등급을 매기기 위한 변동 척도(variable scale)가 포함되어 있으며, OCFO는 지급 보고 사이트에서 템플릿을 작성할 때 위험 요소에 대한 노출을 고려하고 각 위험 요소에 정량적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제공함
 - 하지만 에너지부는 2018 회계연도 평가에서 위험 요소를 점수화하는 데 사용된 변동 척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 에너지부의 전반적인 위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음
- 에너지부가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 차원의 프로세스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이 평가가 부적정 지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평가인지 확인할 수 없음

7. 일부 지출 보고 사이트(payment reporting sites)의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의 타당성 검토 부재

- 선별된 지출 보고 사이트 10개에 대한 위험평가를 검토했을 때, 사이트들은 에너지부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부적정 지출 위험 요소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뒷받침하는 문서가 부재하였음

- OCFO의 검토는 이러한 일부 사이트가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 템플릿을 완료하기 위한 에너지 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함
 - OCFO는 품질 보증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현장의 2018 회계연도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를 검토함
 - 그러나 OCFO의 검토 정도는 명확하지 않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검토된 10개의 지출 보고 사이트 중 8개는 GAO, 에너지부 감사보고서, OMB Circular A-123 관련 평가를 위한 에너지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지원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머지 두 사이트는 본 문서가 부재하였음
- 한 사이트는 문서의 부재가 감사 보고서에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중요한 결함이 없다고 평가함
 - 또 다른 지출 사이트에서는 부적정 지출에 대한 OMB Circular A-123 평가 결과를 포함하라는 OCFO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음
- 검토된 10개의 지출 보고 사이트 중 5개는 에너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에서 고려된 위험 요소에 대한 등급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설명이나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음
- 예를 들어 한 사이트는 위험 요소에 할당된 등급에 대한 근거로 ‘팀 리더와의 논의’를 꼽았으나,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문서가 부재함

8. GAO의 9건의 권고사항

- GAO는 다음과 같은 9가지의 권고사항을 에너지부에 권고함
- Recommendation 1
 - OCFO는 지출 보고 사이트가 모든 부적정 지출에 대해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부적정 지출을 확인·추적·보고하는 절차의 문서화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함
 - Recommendation 2
 - OCFO는 지출 보고 사이트가 OFCFO에 부적정 지출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절차를 개발할 것을 권고함
 - Recommendation 3
 - OCFO는 지출 보고 사이트를 통해 부적정 지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한 문서화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함

- Recommendation 4
 - OCFO는 부적정 지출의 식별 시거나 지출액의 1억달러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정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정보를 추적할 것을 권고함
- Recommendation 5
 - OCFO는 검증 감사(recapture audit)의 실시가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출 보고 사이트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함
- Recommendation 6
 - OCFO는 지출 보고 사이트가 지출 회수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부적정 지출을 식별할 수 있는지 평가할 것을 권고함
- Recommendation 7
 - OCFO는 ① 지출 보고 사이트의 위험요인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변동 척도(variable scale)의 근거를 개발 및 문서화하고 ② 발생 회계연도 이후 식별된 부적정 지출과 관련된 고유 위험(inherent risk)에 대한 고려사항을 문서화할 것을 권고함
- Recommendation 8
 - OCFO는 지출 보고 사이트에서 제출한 위험평가 검토 절차와 부처 수준의 정책을 개정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함
- Recommendation 9
 - OCFO는 필요 시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에 대한 정책과 절차에 대해 부처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

9. 결론 및 요약

- 에너지부의 OCFO는 에너지부가 48개의 지출 보고 사이트에 의존하여 재무보고서에 부적정 지출에 대해 보고하지만, GAO는 2015~2019 회계연도까지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세 가지 이유를 확인함
 - 첫째, OCFO는 지출 보고 사이트에서 부적정 지출을 정확하게 식별·추적·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부의 부적정 지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적정 지출의 식별·추적·보고의 절차를 문서화함으로써, OCFO는 지출 보고 사이트가 부적정 지출에 대해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

- 둘째, OCFO는 지출 보고 사이트가 부적정 지출액을 식별·추적·보고하는 절차를 모니터링 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음
 - 모니터링 절차를 개발함으로써 OCFO는 에너지부가 재무보고서에 보고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음
- 셋째, 에너지부 정책상 지출 보고 사이트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 판단 절차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계약자가 주장하는 비허용 비용(unallowable cost)으로 추가 부적정 지출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에너지부는 M&O 계약 비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선지출 검토(prepayment review)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발생하는 사후 지출 검토를 통해서만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부적정 지출을 발견할 수 있음
 - GAO는 에너지부가 적시에 부적정 지출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을 할 것을 권고함

10. GAO의 의견 및 평가

- GAO는 본 보고서의 초안을 에너지부에 제출하였으며, 에너지부는 GAO의 권고사항 9건 중 6건에 동의했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 밝힘
- 에너지부는 지출 보고 사이트가 지출 회수 감사를 통해 충분히 추가적인 부적정 지출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여섯 번째 권고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음
 - 에너지부는 해당 권고사항에 대해 에너지부 자체에서 부정위험관리(Fraud Risk Management)를 운영하고 부정행위 위험관리 및 데이터 분석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부적정 지출의 예방 및 식별 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힘
 - GAO는 에너지부의 부정위험관리 운영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2021년까지 활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임
- 에너지부는 ① 지출 보고 사이트의 위험요인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변동 척도(variable scale)의 근거를 개발 및 문서화하고 ② 발생 회계연도 이후 식별된 부적정 지출과 관련된 고유 위험(inherent risk)에 대한 고려사항을 문서화하라는 일곱 번째 권고사항에 동의하지 않음
 - 위험요인 산출과 관련해 에너지부는 자체 위험평가가 지출 범주별 지출액과 금액의 변동을 평가한다고 밝힘
 - 에너지부는 지출 보고 사이트에게 지출 금액과 변동과 관련된 위험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하지만, 개별 사이트에서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가 어떻게 개발되고 위험 요소가 어떤 방법

- 으로 고려되었는지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음
- 에너지부는 지출 보고 사이트에서 제출한 위험평가 검토 절차와 부서 차원의 정책을 개정하라는 여덟 번째 권고에 동의하지 않음
 - 구체적으로 GAO는 지출 보고 사이트 평가의 정확성 보장을 위해 지출 보고 사이트에서 제출한 문서에 대한 OCFO의 검토와 승인을 의무화하는 정책 개정을 권고하였음
 - 그러나 에너지부는 OCFO의 검토와 승인 절차 없이도 지출 보고 사이트 위험평가의 정확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함
 - 또한 에너지부는 OCFO의 지출 무결성 지침(Payment Integrity Guidance)을 통해 지출 보고 사이트에서 위험평가에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
 - 본문에서 논의했듯이, GAO가 검토한 10개의 지출 보고 사이트 중 5개의 사이트는 위험요인 등급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설명이나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음
 - 한 지출 보고 사이트는 위험요인에 대해 할당된 등급 결정에 대한 주요 자료로 '팀 리더와의 논의'를 인용한 곳도 있음
 - GAO는 OCFO가 지출 보고 사이트 위험평가에 대한 문서를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개발 및 문서화함으로써 에너지부가 부적정 지출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음

참고자료

미국 GAO, *IMPROPER PAYMENTS: Improvements Needed to Ensure Reliability and Accuracy in DOE's Risk Assessments and Reporting*, 2020. 6. 17., <https://www.gao.gov/products/GAO-20-442>, 검색일자: 2020. 6. 25

(작성자: 박정민 연구원)

3. 호주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 Newsletter, No. 59; 60 –

– 2020. 4.; 6., 호주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

- 본 자료는 호주 재정부의 2013년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성법(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PGPA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관리 개혁의제(Public Management Reform Agenda, 이하 PMRA) 관련 소식과 이슈들을 소개하는 『뉴스레터』(제59호; 제60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1. 2020~2021 기관계획서 및 2019~2020 연차보고서 마감일 연기 논의 및 디지털 보고 권고

- 보고 마감 기한 연기
 - 재정부는 현재 2020~2021 기관계획서(corporate plans)(2020년 8월 31일), 2019~2020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s)(2020년 10월 15일)의 발표 마감시한을 늦추는 옵션을 논의 중에 있음. 이것은 호주 연방 기관들(Commonwealth entities)과 공기업들(companies)이 COVID-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COVID-19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될 것임을 인식하고 2020~2021 예산안은 2020년 10월까지 연기를 고려할 것임
 - 기관이 정상적인 보고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보고기간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재정부는 일부 기관들의 경우 기관계획서와 연차보고서의 제출기한 연기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 재정부(pgpa@finance.gov.au)에 문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 재정부는 향후 보고 마감일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전달할 것임

■ 디지털 보고 도구(Digital Reporting Tool)

- 재정부는 2019~2020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기관에 디지털 보고 도구를 최대한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며, 디지털 보고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은 재정부가 부담하기로 함
- 호주 연방 기관들과 공기업들이 COVID-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력과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부는 연차보고서 작성 시 PGPA 규칙의 의무 보고요건을 충족하는 내용만 포함하고 '허식(gloss)'은 금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함. 이는 연차보고서의 완전한 생산, 인쇄 및 출판을 제공하는 디지털 보고 도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 디지털 보고 도구의 안전한 웹 기반 액세스 방법
 - 모든 연간 보고서 내용을 개발
 - 기본 서식을 채택
 - 모든 필수 템플릿을 작성
 - 문서를 인쇄할 수 있고 의회의 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본 형식으로 문서를 출력함
 - HTML은 transparency.gov.au에 보고서를 게시함
- 디지털 보고 도구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곧 제공할 것이며, 이 단계에서 훈련 준비는 2020년 5월에 시작될 것임
- 2020~2021 기관계획서의 생산 및 출판에는 디지털 보고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 바람

2.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 자문 서비스 – 상시지원

- 재정부는 업무시간 외에도 재정부 전용 수신 편지함을 모니터링하는 PGPA 자문팀을 설립함
 - 이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긴급한 문제 발생 시 정부기관들을 상시지원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자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공지함

3.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Financial Statements Impacts)

- 재무제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와 관련하여 보고 기간을 수정하기로 결정한 바는 없음
 - 재정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무제표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관들과 연락을 취할 것임

- 연말 재무보고서 요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 기업에 추가 내용을 제공할 예정임

4. 컴커버(Comcover)¹⁾ 운영 관련

■ 컴커버 운영 관련 변경 사항

- 2021년 말까지 위험관리 부문의 Comcoverance Excellence 시상식을 연기함
- 최근 Comcover 벤치마킹 설문조사를 격년 모델로 변경하여 다음 설문이 2021년 2월로 예정되어 있음

5. 2021년 1월 31일까지 2020~2021 기관계획서 제출기한 연기

■ 재정부 장관은 PGPA 규칙-공공 거버넌스, 성과 및 책임 수정(기관계획서) 규칙 2020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함

-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 4일에 발효되었으며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연방정부기업(Commonwealth companies)의 책임자 및 책임 당국이 2021년 1월 31일까지 2020~2021년 기관계획서 발표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
- 기관계획서 공개를 연기하기로 선택한 책임 당국과 책임자는 2020~2021년 기관계획서에서 일반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 또한 2020~2021년 기관계획서를 연기한 경우, 연기 이유에 대해 2020년 8월 31일까지 웹 사이트에 메모를 게시해야 함. 연방 정부기관 및 연방 정부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게시할 때 PGPA@finance.gov.au로 전자메일을 보내어 재정부에 알려주기를 요청함
- 참고: COVID-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거나 기관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8월 31일의 일반적인 기관계획서 마감일을 충족해야 함
-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재정부 웹 사이트의 2020~2021 기관계획서 및 2019~2020 연례 보고서 마감지침 문서²⁾를 참고하기 바람

1) 컴커버(Comcover)는 호주 정부자율보험기금(Government's self-managed insurance fund)으로 1998년부터 일반 정부 부문(기금 회원)으로 분류된 호주 정부 기관에 보험 및 위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컴커버는 기금 회원에게 포괄적이고 대응력 있는 위험 관리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 관리를 정부 기능 및 운영에 적용하도록 지원함. 컴커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호주 재정부 홈페이지 '컴커버'(https://www.finance.gov.au/government/comcover)에서 찾아볼 수 있음. 검색일자: 2020. 8. 12.

2) 호주 재정부 홈페이지, 「2020~2021 기관계획서 및 2019~2020 연례보고서 마감 지침」, https://www.finance.gov.au/sites/default/files/2020-06/2020-21%20Corporate%20Plan%20and%202019-20%20Annual%20Report%20Deadlines_4.docx#w, 검색일자: 2020. 8. 4.

6. 2019~2020 연차보고서 제출 마감 연기 가능

- 2019~2020 연차보고서 제출에 대한 연기 신청 가능
 - 재정부는 정부기관들이 연차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출 기한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발표함
 - 이 지침에는 또한 호주연방 정부기관 및 기업형 공공기관 등이 담당 장관으로부터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음. 이 지침은 호주 재정부 홈페이지(RMG 페이지: RMG 132, RMG 133, RMG 135, RMG 136 및 RMG 137)에 있으며, 2020~2021 기관계획서 및 2019~2020 연례보고서 마감일에도 연계되어 있음
 - 연방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2019~2020 연차보고서 발표를 연기할 경우 기존 마감일 이후 가능한 빨리 연차보고서를 담당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PGPA@finance.gov.au로 전자 메일을 보내 재정부에 조언을 요청해야 함
 - 참고: COVID-19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거나 기존의 연차보고서 마감일을 준수할 수 있는 기관은 기존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7. 비법인 연방 공공기관(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ies)의 연례보고서에서 컨설팅 및 비컨설팅 계약의 공개 강화

- 「공공관리, 성과 및 책임 수정안(컨설팅 및 비컨설팅 계약 비용보고) 규칙 2020」이 2020년 6월 3일 연방법제 등록부(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에 등록되었음
 - 이 규칙 개정은 비법인 연방 공공기관의 연차보고서에 컨설팅 계약과 비컨설팅 계약의 공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던 「PGPA법」 및 규칙의 운영에 대한 독립적 검토 권고안 38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수정규칙은 비법인 연방 공공기관이 매년 컨설팅 계약 및 비위탁 계약 수와 지출, 그리고 해당 지출을 수령하는 조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8. 정부 변화에 관한 PGPA 규칙 개정

- 재정부 장관은 정부기관의 기능 이전 및 폐지에 따른 보고약정을 정리한 PGPA 규칙 2014(2020 조치 제2호)의 개정을 승인했음
 - 이 개정안은 2020년 5월 22일에 발효되었으며 PGPA 규칙의 이전 17A조를 폐지함. 이 기준

서는 기업의 중단과 기능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에서 연차재무제표, 연차 성과표 및 연차보고서에 대한 보고약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개의 새로운 섹션(17A~17K 절)을 도입함

- 재정부는 개정안에 뒷받침하기 위해 'RMG 119: 정부 변경에 따른 보고요건'³⁾을 개발했음

9. 성과 정보 개발 – RMG 131A, RMG 131A를 통합하도록 업데이트됨

- 'RMG 131: 좋은 성과정보 개발'⁴⁾은 호주연방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좋은 성과정보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이전에 'RMG 131A-성과 지표 개발'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통합하여(PGPA 규칙 제16EA절에 따라) 공기업이 개발한 성과 측정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10. 연간보고-RMG 135, 136 및 137에서 보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

- '비법인 연방 공공기관(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ies)에 대한 연간보고서(RMG 135)', '법인 연방 공공기관(corporate Commonwealth entities)에 대한 연간보고서(RMG 136)' 및 '연방 공기업에 대한 연간보고서(Commonwealth companies)(RMG 137)'에 대한 업데이트
 - 업데이트 내용은 현재 PGPA 규칙의 요구사항 목록과 일치하며, 세 부분으로 재구성 및 간소화되고 있는 RMG를 포함함.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변경도 이루어짐
 - 데이터 템플릿 및 디지털 연례보고서 보고 툴과 관련하여 각 RMG에 포함된 이러한 내용과 설명 내용을 완료할 때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 템플릿을 업데이트함
 - 기타 고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 데이터 템플릿의 첫 번째 보고 범위가 220만달러에서 225만달러로 변경하도록 업데이트됨
 - 감사위원회 보고 요구사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각 기업에 대한 준수 지수 (Compliance index)를 업데이트함

3) 호주 재정부 홈페이지, 「RMG 119: 정부 변경에 따른 보고요건」, <https://www.finance.gov.au/publications/resource-management-guides/reporting-requirements-following-machinery-government-changes-rmg-119>, 검색일자: 2020. 8. 4.

4) 호주 재정부 홈페이지, 「RMG 131: 좋은 성과정보 개발」, <https://www.finance.gov.au/government/managing-commonwealth-resources/developing-good-performance-information-rmg-131>, 검색일자: 2020. 8. 4.

11. 연차보고서에 임원 보수에 대한 보고—RMG 138 및 139

- 2020년 4월 말 ‘RMG 138: 연차보고서의 영연방기업 임원보수 보고안내서’ 및 ‘RMG 139: 연차보고서의 영연방기업 임원 보수 보고 안내서’가 발간됨
 - 지침 자료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모범 사례의 포함
 - 복리후생세(fringe benefits tax)⁵⁾ 포함에 대한 명확화
 - 임원 보수 보고 요건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재정부 장관의 면제를 요청하는 절차 포함
 - 주요 경영진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정보(RMG 138에만 해당)
 - 2019~2020년 고임금 직원 기준 포함(RMG 138만 해당)
 - 정부 변경 기계의 결과로 기능이 이전되는 경우 보고 책임(RMG 138만 해당)
 - 해외주거급여 제시에 관한 추가 지침(RMG 138만 해당)

12. 새로운 기능—RMG 423: 조달 출판 및 보고 의무

- 재정부는 연방조달기본 및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관련 법인에 대한 조달 출판 및 보고 요건을 명시한 새로운 RMG를 발표하여 공무원들이 보고 의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함
 - RMG 423: 조달 출판 및 보고 의무는 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RMG에는 기업이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는 공동자산 내 약정에 대한 정보와 품질보증에 관한 섹션이 포함되어 있음
 - 새로운 RMG의 발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기존 RMG가 변경됨
 - RMG 407: 개방형 시장 접근법에 대한 광고 제한은 RMG 423에 통합되어 RMG 407은 폐기됨
 - RMG 411: 보조금, 조달 및 기타 재무약정이 자산 내 약정의 분류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됨

5) 복리후생세(fringe benefits tax)란 고용주가 직원이나 직원의 가족 또는 기타 직원에게 제공하는 특정 혜택에 대해 적용되며, 부가혜택의 과세가치에 따라 계산됨. 고용주는 복리후생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복리후생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ato.gov.au/General/fringe-benefits-tax-\(fbt\)/](https://www.ato.gov.au/General/fringe-benefits-tax-(fbt)/))에서 찾아볼 수 있음, 검색일자: 2020. 8. 12.

13. 컴커버(Comcover) – 위험 교육(Risk Education)

- 컴커버(Comcover)는 위험 교육 분야에서 e-러닝 및 대면 교육과정 외에도 원격으로 작업하면서 위험 관리에 대해 호주공공서비스(Australian Public Service, 이하 APS)를 교육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이크로비트 학습(Microbite learning)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터넷 상의 모든 ‘방법(how to)’ 비디오와 유사하게 작고 구체적인 버스트로 콘텐츠를 전달함
 - 봉쇄가 시작된 이후 컴커버는 세 개의 마이크로비트를 출시했고, 40개 이상의 기관들에서 2천회 이상 조회되었음
 - 또한 재택근무 중에도 컴커버의 무료 위험 e-러닝 모듈을 활용하여 컴커버 학습 센터(모든 호주공공서비스(APS) 담당자에게 무료)를 통해 위험 관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음

참고자료

- 호주 재정부(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 59, 2020. 3. 5.,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0/pgpa-newsletter-59>, 검색일자: 2020. 4. 3.
- 호주 재정부(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Newsletter* 60, 2020. 6. 18., <https://www.finance.gov.au/about-us/newsletters/2020/pgpa-newsletter-60>, 검색일자: 2020. 7. 6.

(작성자: 봉재연 선임연구원)

4. 뉴질랜드

공공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2020. 6.,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 -

1. Kiwis Count 설문조사의 개요

-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⁶⁾는 2020년 6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인 Kiwis Count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설문조사 내용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사용 경험, 서비스 이용 시의 대우, 각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이며, 개별 서비스의 결과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산출함
 - 43개의 공공서비스 중 이용한 서비스가 있는지 질문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측정함. 전체 서비스 품질점수(Service Quality Score, 이하 SQS)는 43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⁷⁾를 집계하여 나온 결과임
 - 공공서비스위원회는 2007년부터 Kiwis Count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는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연간 결과는 공개적으로 공유되며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중간(반년마다) 결과를 제공함
- 보고는 2020년 6월에 발표한 2019년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한 주요 결과에 대해 정리한 것임

6)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새로운 공공서비스법 2020」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국가서비스위원회(State Services Commission)의 명칭에서 변경된 것임. 명칭 변경의 이유는 뉴질랜드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법」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 관련 내용은 공공서비스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ublicservice.govt.nz/about-us/>)를 참고함. 검색일자: 2020. 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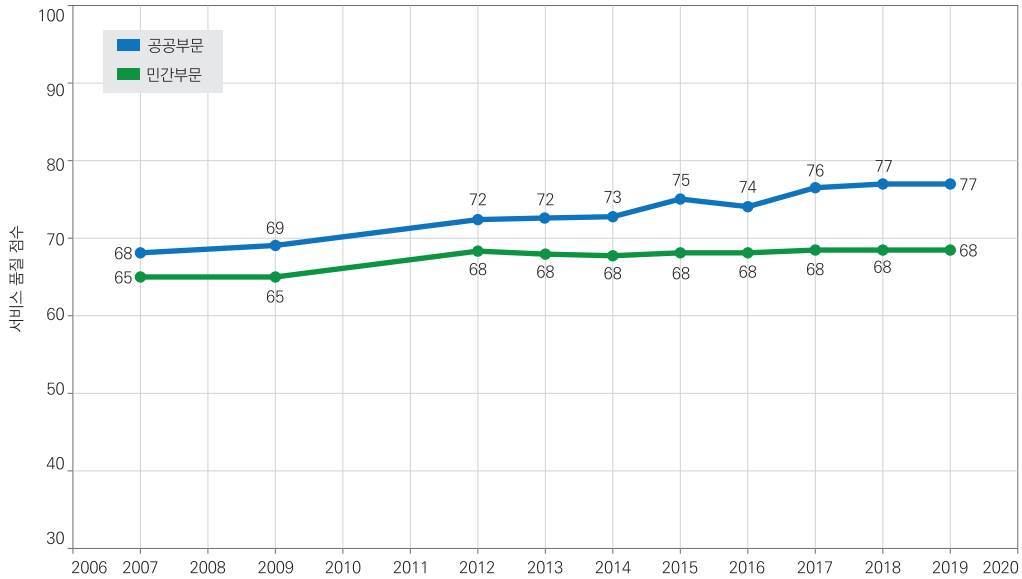
7) 43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공공서비스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ublicservice.govt.nz/resources/kc-service-satisfaction/>)를 참고 바람. 검색일자: 2020. 8. 24.

2. 2019년 설문조사의 주요결과

- 2019년 전체 서비스 품질점수(SQS)는 77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2007년보다 9점이 나 상승한 것으로 2018년과 같은 수준임
 - Kiwis Count는 아래 제시한 두 가지 방법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trust)를 측정함
 - ① 공공서비스 사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뉴질랜드인의 신뢰: 개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응답자들에게 가장 최근의 공공서비스 상호 작용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측정함
 - ② 공공서비스 브랜드 인식(perception)에 대한 신뢰: 공공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응답자들에게 “전반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함
 - 뉴질랜드 국민의 79%는 개인의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신뢰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49%로 조사됨
 - 공공부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2년 이후 70점대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민간부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8점으로 8년 동안 같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
 - kiwis Count는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7가지 유형의 민간부문 회사(은행 또는 금융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 및 전기 또는 가스회사)의 이용 경험과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여 민간부문의 서비스품질점수(SQS)를 산출함
- 설문조사 결과는 최신 Colmar Brunton 2020 공공부문 평판지수(Public Sector Reputation Index)와 일치하며, 또한 지난해 38개국 중 뉴질랜드를 종합 2위(청렴도, 능력, 조달 부분에서는 1위)로 평가한 공무원효과성 국제지수(International Civil Service Effectiveness Index)⁸⁾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음

8) 공무원효과성 국제지수(InCISE)는 공무원 업무 효과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국제지수로, 전 세계 중앙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효과적인 공무원은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효과성 국제지수의 핵심 목표는 국가가 중앙 공무원 서비스가 수행되는 방식을 결정하고 서로에게 배우도록 돕는 것임(자료: <https://www.bsg.ox.ac.uk/about/partnerships/international-civil-service-effectiveness-index-2019>, 검색일자: 2020. 7. 30.)

[그림 1] 서비스 품질 점수(SQS)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자료: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ublicservice.govt.nz/resources/kc-service-satisfaction/>), 검색일자: 2020. 7. 14.

■ 2019년 설문조사 결과 주요 특징

- 여성은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신뢰도가 남성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만족도도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공공부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 2019년 아시아인, 유럽계 뉴질랜드인 및 파시피카(Pasifika) 민족⁹⁾의 사람들은 개인경험에 대한 신뢰도가 비슷한 수준(각각 79%, 81% 및 76%)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마오리족의 결과는 6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임
- 2019년 아시아 민족은 공공부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57%), 파시피카(51%), 유럽계 뉴질랜드인(48%), 마오리족(40%) 순으로 나타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오리족과 비마오리족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었고 2018년 17%p에서 현재 10%p까지 격차가 감소했음
- 모든 인종 그룹은 공공부문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마오리족은 다른 모든 인종에 비해 낮게 나타남

9) 파시피카(Pasifika)는 태평양 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세아니아의 세 개 주요 하위 지역(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및 폴리네시아)의 주민과 디아스포라를 설명하는 지리적 및 민족적, 인종적 용어임(자료: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asifika>, 검색일자: 2020. 8. 6.)

- 장애가 있는 응답자는 장애가 없는 응답자보다 2018년보다 2019년에 개인경험에 근거한 신뢰도가 낮았고, 공공부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높았음
- 장애가 있는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젊은 사람들보다 높음
- 지난 10년 동안 공공서비스의 질에 대한 뉴질랜드인의 만족도 향상은 2012년 또는 그 이전에 측정된 32개 서비스 중 21개가 처음 측정된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임
- 2018년 서비스 중 하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2018년의 평상시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이상치일 수 있음
- 뉴질랜드인은 대면채널(37%)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가장 자주 접하며, 두 번째 채널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는 것(16%)으로 나타났으며, 1% 정도가 소셜미디어(예: Facebook 또는 Twitter)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계획

- 뉴질랜드 정부와 공무원들은 정부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와 확신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향후 Kiwis Count 조사는 이러한 신뢰(trust)와 확신(confidence)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표본의 크기를 2천개에서 4천개까지 늘리며, 결과를 연간 주기에서 분기별로 발표할 예정임

참고자료

뉴질랜드 국가서비스위원회(Kiwis Count highlights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https://ssc.govt.nz/resources/kiwis-count-highlights-satisfaction-with-public-services/>, 검색일자: 2020. 7. 7.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Te Kawa Mataaho Public Service Commission), “Kiwis Count—Service Satisfaction,” <https://www.publicservice.govt.nz/resources/kc-service-satisfaction/>, 검색일자: 2020. 8. 24.

(작성자: 봉재연 선임연구원)

2020년 예산과 웰빙접근법 (Budget 2020 and the Wellbeing Approach)

– 2020. 5., 뉴질랜드 재무부–

1. 2020년 예산과 웰빙접근법의 개요

■ 2020년 예산에 웰빙접근법을 추진한 이유

-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을 뉴질랜드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웰빙(wellbeing)에 두고 있음. 뉴질랜드 재무부는 2019년 첫 웰빙예산(wellbeing budget)을 발표하였음
- 웰빙예산은 5가지 예산 우선순위¹⁰⁾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였는데, 이 우선순위는 정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뉴질랜드 사람들이 중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됨
- 예산에 웰빙을 포함한 이유는 기관 칸막이를 타파하고 현 세대의 요구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임
- 뉴질랜드 재무부는 예산과 정책의 개발 방식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아동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들은 단일 예산안을 통해 의미있게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 이것이 뉴질랜드 정부가 첫 번째 웰빙 예산의 성공을 바탕으로 2020년 예산에 웰빙접근법을 취하기로 한 이유임

■ COVID-19로 인한 2020년 예산 재정비와 변화

- COVID-19의 발병으로 뉴질랜드는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기존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주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2020년 예산 패키지를 신속하게 재정비하였음

10) 웰빙 예산의 우선순위는 뉴질랜드의 삶의 기준과 웰빙의 개선에 장기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것들을 토대로 하였음. 5가지 우선순위 영역은 ① 정신건강 지원(정신질환 예방부터 집중 치료까지 지원) ② 아동 복지 개선(아동빈곤개선,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등) ③ 소수민족 지원(마오리 원주민과 남태평양계 뉴질랜드인들의 삶을 지원) ④ 생산적인 국가건설(벤처투자 확대, 연구혁신기업 지원, 직업학교 개혁) ⑤ 경제변화(지속가능하고 저배출 경제로 전환)으로 뉴질랜드가 직면한 장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웰빙예산 관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홈페이지의 다음 주소를 참고 바람(<https://treasury.govt.nz/publications/wellbeing-budget/wellbeing-budget-2019.html#section-4>), 검색일자: 2020. 8. 4.)

-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COVID-19로 인해 급변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2020년 예산에 작년처럼 웰빙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음. 상황이 안정되면 보다 정확한 측정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웰빙 어젠다에 전념하고 있으며,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두 번째 웰빙 예산과는 다르지만 현재와 미래 세대의 뉴질랜드 사람들의 웰빙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이면의 목적은 여전히 같다고 볼 수 있음

2. COVID-19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 COVID-19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조치

- COVID-19 대유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미 나라 전역과 전 세계에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야기하였음. COVID-19 발병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완화시키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 또한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필요한 재정적·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회복 조치를 시행해 왔음
- 뉴질랜드 정부는 해외에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보고 일찍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음. 뉴질랜드 국민과 일자리, 경제를 지키기 위해 3월 17일, 121억달러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5월 4일에는 170만명에 대한 임금보조금제도(Wage Subsidy Scheme)를 포함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28억달러의 소득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106억달러의 지원계획을 발표함
- 또한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금융보증계획(Business Finance Guarantee Scheme)과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 계획(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의 두 가지 계획을 도입하였음
 - 기업금융보증계획은 COVID-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단기 신용을 제공하는 것임. 이 계획은 연간 8천만달러 이하의 매출 기업에 대출당 최대 50만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 계획은 COVID-19 위기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 저비용 대출을 제공하여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 및 고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이 계획은 자격을 갖춘 사업체에 1만달러를 지원하며, 정규직 직원 1명당 1,800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것임

■ COVID-19 대응 및 복구 기금

- 2020년 예산은 공식적으로 500억달러의 COVID-19 대응 및 복구 기금(COVID-19 Response

- and Recovery Fund, 이하 CRRF)을 설립함
- 이 기금은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COVID-19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121억달러의 지원 계획과 연계되어 사용됨
 - 임금 보조금 제도에 대한 초기 자금(3월 17일에 발표)을 확대하기 위해 69억달러를 지원
 - 법인세 경감 대책으로 19억달러를 지원
 - 원격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봉쇄 기간 동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 부문에서 1억 7천만달러를 지원
 - 보건, 항공 및 사회 부문의 단기적 대응을 위한 지원 다수 포함
 - COVID-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통해 추가 이니셔티브와 패키지를 진행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여기에는 인프라·보존·고용 계획 및 기술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포함되며, 뉴질랜드 전역의 취약계층과 산업·부문의 취약계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뉴질랜드 사람들의 웰빙(wellbeing)을 두겠다는 약속에 따라 CRRF에 제출된 지출 제안서를 평가할 때 웰빙의 관점과 틀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 2020년 예산 패키지의 핵심은 COVID-19에 대한 대응 및 복구 기능을 지원하는 것임

■ 2020년 예산 주요 내용

- COVID-19 대응 및 복구 기금 설립에 500억달러 지원
- 모든 지역보건위원회(DHB)의 모집단(populations)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도록 39억달러 지원
- 노후 여객선 및 기관차 교체 등 뉴질랜드 전역의 교통 개선에 11억달러 투자
- 기금에 대한 보조금, 교육자에 대한 임금 인상, 가정 기반 교육자(home-based educators)에 대한 추가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속성에 대한 투자, 조기 학습 부문에 4억 1,420만달러를 지원
- 가정 폭력 서비스 기관(가정 폭력 프로그램 제공자는 법무부와 계약하여 안전 및 비폭력 교육과정과 서비스를 제공함)을 위한 상당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에 2억 4,610만 달러 투자
- 소의 세균성 질병인 마이코플라즈마 보비스 박멸을 통한 농업인 지원에 1억 9,350만달러 지원

-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연결성이 높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 소방 및 구급차의 노후화된 통신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4,780만달러를 지원

3. 웰빙 예산-함께 재건(WELLBEING BUDGET-REBUILDING TOGETHER)의 주요 내용

■ 2020년 예산의 핵심내용

- 2020년 예산은 비용 압박에 대처하고 COVID-19로부터 재건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웰빙 예산: Rebuilding Together 패키지는 매년 30억달러 이상의 운영 자금을 투자하여 이 특별한 시기에 핵심적인 정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뉴질랜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보건 분야에 56억달러를 지원해 기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COVID-19 대유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16억달러를 정부 및 비정부 사회서비스에 투자하여 뉴질랜드 국민들의 교육·고용·주거 성과를 지원할 예정임
- 2020년 예산에는 5가지 예산 우선순위(예비 2019년 예산 및 2020년 예산 정책 설명서에 발표)를 중심으로 한 이니셔티브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발표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향한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임
- 뉴질랜드 정부는 예산 우선 순위에 따라 정책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모든 COVID-19 대응 및 복구 조치가 더 광범위하게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하면서 투자해 나갈 것임

4. 분야별 예산의 내용

■ 보건 분야(총 운영비용 56억달러, 총 자본 7억 5,500만달러)

- 기존 서비스를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면서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복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할 계획임
 - 뉴질랜드 전역의 지역보건위원회(DHB) 20곳에 추가 지원(총 운영비용 39억달러)
 - 복합 의약품에 대한 예산 지원(총 운영비용 1억 6천만달러)
 - 뉴질랜드 장애인들이 보다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지원서비스 지원(총 운영비용 8억 3,250만달러)
 - 출산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 및 출산 행동 계획(Maternity Action Plan)의 실

행 활성화에 지원(총 운영비용 1억 7,700만달러)

- 지역보건위원회(DHB)에 대한 자본 투자 증가(총 자본 7억 5천만달러)

■ 사회 분야(총 운영비용 6억 6,530만달러, 총 자본 8,720만 달러)

- 2020년 예산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고용·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비정부 사회서비스 모두에 상당한 투자를 계획함
- 강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로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를 포함하며, 노인·장애인·가정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함
 - 커뮤니티 서비스: 가정폭력 서비스(총 운영비용 1억 8,300만달러)
 - 커뮤니티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유지(총 운영비용 4,330만달러)
 - 커뮤니티 서비스: 뉴질랜드 지역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총 운영비용 1,980만달러)

■ 교육 분야(총 운영비용 8억 1,360만달러, 총 자본 1억 1,510만달러)

- 뉴질랜드의 교육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임. 그러나 마오리족과 태평양 지역 학생, 장애 학생, 그리고 난민과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총 운영비용 3억 7,510만달러)
 - 학습 지원(총 운영비용 7,970만달러)
 - 학교에 대한 투자(총 운영비용 1억 1,950만달러, 총 자본 1억 1,540만달러)
 - 조기 학습 교육 패키지(총 운영비용 2억 9,160만달러)

■ 1차 산업(총 운영비용 4억 4,370만달러, 총 자본 4,250만달러)

- 뉴질랜드의 1차 산업은 뉴질랜드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COVID-19 이후 경제 회복에 진입함에 따라 1차 산업의 현재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니셔티브에 투자할 계획임
 - 마이코플라스마 보비스(소의 세균성 질병) 근절 프로그램 지속(총 운영비용 1억 9,350만달러)
 - 1차 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의 현재의 운영 범위(농업, 생물학, 임업, 수산 및 식품 안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활동)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총 운영비용 1억

2,610만달러)

- 수요를 충족하고 저배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 배출권 거래 계획(ETS) 인프라 재구축(총 운영비용 4,340만달러, 총 자본 3,620만달러)

■ 사법 분야(총 운영비용 6억 610만달러, 총 자본 1억 6,970만달러)

- 2020년 예산은 안전하고 공평한 사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함. 그것은 법원, 기술, 인플레이션 압력, 조직적 변화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기반시설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투자할 계획임
 - 차세대 주요통신(총 운영비용 4,780만달러)
 - 안전한 교도소 네트워크 유지 관리(총 운영비용 1억 1,040만달러)

■ 국방 및 외무부(총 운영비용 9억 2,770만달러, 총 자본 9억 4,250만달러)

- 정보통신기술(ICT)과 국방 관련 기반시설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것임. 또한 뉴질랜드 국방군(NZDF)과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방 및 안보 정책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2019년 국방 역량 강화 계획에 따라 새로운 항공기 도입(노후된 C-130H 헤라클레스 함대를 신형 C-130J 슈퍼 헤라클레스 항공기-현 단계에서 선호되는 옵션-로 대체)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부 자금 지원(총 자본 8억 9,800만달러)
 - 2018년 전략적 방위 정책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 정부정책 및 역량 우선순위를 지원(총 운영비용 6억 6,630만달러)
 - 피지,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동티모르 국가들에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인권, 성평등, 아동 및 청소년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총 운영비용 5,560만달러)

■ 운송 분야(총 운영비용 2억 2,290만달러, 총 자본 11억달러)

-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 철도 및 여객선 네트워크의 복원력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에 기여할 것임
 - 「육상 운송 관리법」에 따라 철도 활동의 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총 운영비용 1억 4,820만달러)
 -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 화물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섬 연결 여객선에 지원(총 자본 3억 9,950만달러)

-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 차량 투자(총 자본 4억 2,170만달러)

■ 예술 및 문화(총 운영비용 2억 4,680만달러, 총 자본 3,750만달러)

- 2020년 예산은 예술과 문화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뉴질랜드의 타옹가(taonga, 보물을 뜻하는 마오리어)를 보존하는 데 사용됨.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역사를 기념하며,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패키지는 뉴질랜드 영화 산업과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소장품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청각 장애가 있는 뉴질랜드인과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대중매체 플랫폼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사업에 지원함
 - 왕실의 시청각 컬렉션 수집(총 530만달러, 총 자본금 2660만달러)
 - 핵심 공공 미디어 플랫폼 유지를 위한 지원(총 2,500만달러 운영)
 - 뉴질랜드 역사 유산기관(Heritage New Zealand Pouier Taonga)에 대한 재정 지원(총 운영비용 610만달러)
 - 뉴질랜드 정보 및 기록 관리기관(Archives New Zealand)의 시설과 국립도서관 개선 및 신규 지역의 공유저장소(New Regional Shared Repository) 설립에 대한 지원(총 운영비용 4,660만달러, 총 자본금 1억 4,600만달러)

참고자료

뉴질랜드 재무부, *WELLBEING BUDGET 2020 REBUILDING TOGETHERs*, 2020. 5. 14., <https://treasury.govt.nz/publications/wellbeing-budget/wellbeing-budget-2020>, 검색일자: 2020. 7. 7.

(작성자: 봉재연 선임연구원)

5. IMF

COVID-19 대응을 위한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준비 (Preparing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for Emergency Response Challenges)

– 2020. 6. 4., 국제통화기금(IMF) –

- 본 자료는 IMF에서 발간한 COVID-19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 특별시리즈(Special Series on Fiscal Policies to Respond to COVID-19) 중 하나로서, 세계 각국 정부가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이하 PFM)를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요약·정리한 내용임

1. COVID-19 대응을 위한 공공재정관리(PFM) 목표

- 세계 각국 정부는 COVID-19 발병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긴급 대응을 위해 정부의 광범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
-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은 정부가 긴급 대응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응급 의료 서비스 지원, 의료 용품 및 장비 구입, COVID-19 발생 감지, 억제 및 완화에 필요한 인력 투입
 - 주요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보장
 - 경제난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대책 마련
 - 공무원의 부재에도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2. 즉각적 고려사항: 추가 예산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

- 각국 재정당국은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고, 긴급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의 비상 대응

메커니즘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할 수 있음

- 예산 범위 내의 예비비: 비상 상황 시 필요한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우선순위 중심으로 예비비 투입
- 비상 지출 충당금(Emergency spending provisions): 긴급 상황 발생 시,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통해 예산의 초과 지출을 허용하여 추가적인 예산 지원
-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및 지출 재분배를 통해 추가 지출이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지원
- 추가 예산 집행: 지출이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추가 예산 집행을 통한 지원

3. 비상 대응을 위한 공공재정관리 메커니즘 구축

■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 재정당국은 긴급 대응을 위한 소요 재원을 추정하고, 보건 및 필수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낮은 우선순위의 지출을 파악하여 줄여야 함
 - 각 부처 예산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 사업 진행 정도, 여유자원을 고려하여 비용을 절감하도록 요구
 - 이는 중앙정부가 낮은 우선순위 분야(예: 스포츠)에서 높은 우선순위 분야(예: 의료, 사회 지원 프로그램)로 예산을 할애하는 데 도움을 줌
 - 지출 삭감은 COVID-19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야(예: 관광업, 중소기업 부문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유동성 보장, 현금 및 부채상황 재조정

- 현재 예산 내에서 추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COVID-19로 인해 차후에 더 많은 현금 지출(Cash disbursement)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부 부채 및 현금 관리자(Debt and cash managers)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자금조달 및 유동성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예측 불가능한 현금 흐름과 증가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현금 완충장치(Cash buffer) 수준 재설정
 -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할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먼저 지출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 구축

- IMF나 World Bank와 같은 국제 금융 기관에서의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준비

■ 재정 적기투입 보장

- 견고한 예산 집행 과정은 부처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
 - 보건복지부와 같은 일선부처에 더 많은 금융권한을 위임하여 재정 적기투입을 도울 수 있음
 - 실시간 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자금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함
 -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공공 및 민간 기관이 필요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는 데 유용함

■ 업무 연속성 보장

- 병가를 신청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직원 결원에 대비하여 업무 연속성 계획을 준비해야 함
- 업무 연속성 계획의 개발 및 시행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긴급 상황에서 다음의 간단한 조치들을 통해 큰 효과를 낼 수 있음
 - 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운영 리스크 관리 업무 권한 부여
 - 담당자의 부재 시, 주요 프로세스 및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부담당자 배정
 - 원격근무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통신시스템 점검
 - 필요시, 담당직원이 아닐지라도 주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단계별 가이드라인 작성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시민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과 품질 개선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정책 유연성 제공

- 공공재정 관리자들은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의사 결정자들에게 정책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함

4. 정부 책무성 확보

- 중기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은 주요 정책 목표 달성률로 측정됨
 - 프로그램 예산제도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잘 발달된 국가는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의 영향을 기록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감사기관은 공적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대응책(Measures)의 사후적 영향은 어떠한지, 정부의 책무성은 확보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음
 - 정부는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간결한 방법으로 정책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참고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reparing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for Emergency Response Challenges*, 2020. 4. 6., <https://www.imf.org/en/Search#q=Preparing%20Public%20Financial%20Management%20Systems%20for%20Emergency%20Response%20Challenges&sort=relevancy>, 검색일자: 2020. 7. 6.

(작성자: 심태완 연구원)

6. World Bank

COVID-19 대응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Role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Emergency and Post Emergency Phases)

– 2020. 6. 1., World Bank –

- COVID-19로 인해 세계는 전례 없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Supreme Audit Institutions)은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규율을 유지하고 투명성(Transparenc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본 자료는 각국 감사원이 COVID-19로 인한 현재 위기와 앞으로의 회복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함

1. COVID-19 비상 단계

-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강력하고 유능한 감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정부의 성숙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비상사태 중에 사기와 부패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는 공적자금을 부도덕하게 오용 및 남용하는 경우를 억제할 수 있음
- COVID-19 비상 단계 중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음
 - 국민, 일선부처 직원, 감사원 직원 및 피감기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

- 원격 감사 기술(Remote audit technology)을 활용하여 COVID-19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운영 유지
 - 정부 대응 모니터링, 기록, 분석을 통해 COVID-19 감사 추적 확보
 - COVID-19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여 대응 역량 강화
 -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부의 COVID-19 긴급대응 정책을 감독하는 메커니즘 구축
- 감사원은 비상단계 중 운영상 어려움에 대응해야 함
- 감사원과 피감기관의 직원 결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감사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전자 감사 시스템이나 원격근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감사원의 경우 운영이 더욱 어려울 수 있음
 - 감사원이 COVID-19 이전에 작성한 감사 계획과 프로그램은 COVID-19에 맞춰 상당한 재조정이 필요함
- 일부 감사원의 경우, 관련 경험, 전문가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 COVID-19 대응에 대한 감사 준비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감사원은 COVID-19 긴급 감사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 엔지니어, 조달 전문가, 사회학자, 데이터 분석가 및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고려해야 함
 - 일례로 한국의 감사원은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대응을 위해 역학 및 바이러스학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였음
 - 감사원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감사 세부 기준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비상 단계에서 감사원은 피감기관(Auditees)을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함
 - 소통을 통해 피감기관과 협력하고, 신속한 예산 책정, 회계 및 지급 과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음
- 감사원의 독립성과 재원을 보장받아야 함
- 국가가 COVID-19와 같은 규모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높아짐
 - 감사원에 대한 현저한 예산 감소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임

- 감사원은 비상단계에서 감사원의 개입이 정부재정 절감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공자원을 신중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감사원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COVID-19 추가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실시간 감사(Real-time audit)를 통해 경영진에게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해야 함
- 감사는 보통 사후감사가 일반적이나, 급변하는 비상대응계획의 빠른 방향 수정을 위해 실시간 감사를 시행함
 - 실시간 감사를 통해 긴급 정책과 절차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제공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음
 - 감사원은 국가 위기관리에 대해 실시간 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COVID-19에 대한 정부의 대비,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 등을 살펴보는 실질적 책임 프로그램을 수행함
 - 미국 정부책임처는 정보 제공, 모범사례 공유, 입법안 검토, COVID-19 관련 향후 감사업무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미국 의회를 지원하고 있음
- 정부의 예산집행 결과와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감사원은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정부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자금 출처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
 - 감사원의 권한 범위 밖에서 자금이 조성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신규 자금이 감사원의 권한 범위 밖에서 조성되었다면 그 자금들이 법적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
- 감사원은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비상 단계에서 정부의 결정은 성과목표에 영향을 미침
 - 일반적으로 금융 통제는 약해지고, 재정당국은 충분한 검토 없이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재정의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감사원에서 이전의 경기 회복 프로젝트(Recovery projects)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40%에 육박하는 긴급 지출 관련 비리가 발견됨
 - 감사원은 모든 변화를 신중히 살펴보고 위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사원은 누락된 감사 추적 활동을 식별하고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

2. COVID-19 비상 단계 이후

- 비상 단계 이후 감사원은 정기감사를 재개하고 COVID-19 비상운영에 대한 사후감사를 시작해야 하며, 정부의 재무제표와 성과감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특히 감사원은 국가 정상화에 필요한 공적 자금에 대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
- 비상 단계 이후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COVID-19 대응에 대한 준수, 재무 및 성과 감사에 대한 계획 수립
 - 원활한 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에 사전 정보 제공
 - COVID-19 대응에 대한 정부 자체 평가를 활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감사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자금 출처로부터의 지출에 대한 감사 절차 수립
 - 빠른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적시에 감사 결과 제공
- 감사원은 다양한 출처로 구성된 지출에 대해서도 감사에 대한 책임성(Audit responsibility)을 가져야 함
 - 비상 단계 시 정부는 비상 대응을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기업과 민간에서 기부금을 출연하기도 함
 -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기부금은 정부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기금 예산의 감독 및 정부 재정 관리 감독 절차를 피할 수 있음
 - 감사원이 특별기금 감사 권한 밖에 있을 경우 책임성 약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 감사원을 비상기금 감사관으로 임명하여 기금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만일 민간 감사기관에 감사를 맡겨야 할 경우, 감사원이 민간 감사기관의 선정, 업무 및 보고서 관리감독에 관여할 수 있음
 - 지출이 양쪽 출처(정부 예산 및 특별기금)에서 발생할 경우, 감사원이 특별기금에 대한 감사 책임이 없더라도 COVID-19 지출에 대한 정기적 성과감사 시 같이 검토해야 함
- 피감기관의 감사 준비 여부를 확인해야 함
 - COVID-19에 관한 감사는 보건복지부, 재난 관리 기구, 재무부와 같이 자금조달 및 위기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함
 - 감사원은 감사가 원활히 수행되고 결과가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감사 관련 사

항을 긴밀히 소통해야 함

- 정부는 고위급 포럼(High-level forum)을 통해 감사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감사보고서는 적시성이 핵심이므로 빠르게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중요함

- 감사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제한사항 중 하나는 감사보고서의 품질은 우수하나 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임
- 정부와 입법부가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COVID-19 이슈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선명할 때이므로, 하나의 종합 보고서 대신 주제별로 구성된 짧은 간행물의 발행을 통해 보고서를 빠르게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사원은 COVID-19 대응에 대한 감사 시 정부 자체평가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감사원은 정부 자체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COVID-19 대응의 전문성 측면을 보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유행성 전염병인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때, 감사원은 후속 전염성 질병 비상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을 평가하고 사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고한 바 있음
- 감사원은 시민, 보건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평가 과정을 검토하여, 감사 평가 계획 작성에 반영해야 함

■ 적합한 감사 절차를 위해 COVID-19 지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각각의 지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감사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COVID-19 지출은 ① 의료 지원 ② 사회 보장 및 인도적 지원 ③ 경제적 지원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
- 각 지출 범주는 수령인, 목표, 고유 위험 요소가 상이하고, 감사 가능성(Auditability), 감사 시기(Audit timing), 감사 질문(Audit questions)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출 범주별 다른 감사 유형이 적용되어야 함

■ 책임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함

- 감사원은 내부 감사기관, 조달청, 부패방지 기구 등의 책임 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필요가 있음
- 책임 기관의 연대가 확대되면, 시스템 강화와 투명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임

- COVID-19를 대비함에 있어 실질적인 이점이 많은 협업 감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제회계감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는 COVID-19가 여러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재난 위험 감소에 있어 감사원 간의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협업 감사는 COVID-19 조기 발견을 위한 대비를 강화할 수 있고 감사원 업무에 대한 신뢰도 제고, 대중의 인식 개선, 국내외에 걸친 정보 공유와 같은 이점이 있어 중요함

참고자료

World Bank Group, *Role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Emergency and Post Emergency Phases*, 2020. 6. 1.,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3901>, 검색일자: 2020. 7. 8.

(작성자: 심태완 연구원)

7. OECD

아르헨티나의 예산 제도 (Budgeting in Argentina)

– 2020. 5. 19., OECD –

1. 배경

- OECD는 예산관리위원회(Council on Budgetary Governance)의 OECD 권고안과 OECD 우수사례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예산 체계와 예산 전반의 과정(예산 전략, 예산 관리, 예산 감독)에 대해 검토하였음
- 이는 전략적 자원 배분, 지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OECD는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아르헨티나 당국에 맞춤형 권고 사항을 제시함
-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OECD의 검토내용 중 전략적 관점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예산 전략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요약·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음

2. 예산 전략(Budget strategy) 부분의 개요

- 예산 전략 부분에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 재정 목표와 중기 계획, 설비 예산, 재정 리스크 관리,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을 논의함
- 아르헨티나는 OECD 권고안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지만, 최근 재정 성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아르헨티나의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줌

3. 재정 목표, 중기 전략과 계획

■ 재정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

- 아르헨티나는 2018년, 연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줄이고 공공부채를 하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사실상의 재정목표로서 기초 재정 수지(Primary Balance)의 균형을 약속함
- 이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 재정 수지의 균형을 달성한 뒤, 그 후에 흑자를 내는 방식으로 공공재정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에 입각하고 있음

■ 불안정한 거시경제는 예산 거버넌스¹¹⁾를 어렵게 함

- 아르헨티나는 재정 목표, 예산 전략, 부처별 연간 지출 한도에 근거한 하향식 예산제도를 사용함
- 중기재정 관리체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는 하향식 예산제도를 위해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재정 목표와 예산 전략에 맞춰 최소 3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
-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은 중기 재정 목표와 예산 전략을 포함한 예산 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함
-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정책 입안자나 예산 담당자는 거시경제와 재정 전망, 중기재정 관리 체계에서 도출된 지출 추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단기 예산 계획만 수립함

■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OECD는 다음과 같이 권고함

- 단기 예산 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3년 이상의 중기 예산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재무부와 관련 부처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는 아르헨티나의 재정계획을 위협할 수 있는 지출을 조기에 파악해 재정계획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됨

4. 국가 개발 계획을 위한 전략적 설비 예산(Capital budgeting) 편성의 필요

■ 설비 투자(Capital investment)의 감소

- 아르헨티나의 총지출 대비 설비 투자는 2017년까지 10년간 감소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교통,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크게 감소함
- 설비 예산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아닌, 저투자과 재정 제약으로 인해 유지보수

11) 예산 거버넌스는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상황을 감독하며, 공공 목표와의 연계를 보장하는 과정임

가 필요한 기존 인프라에 투입됨

- 인프라 성과 및 자산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방식의 부재는 새로운 인프라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제한함

■ 설비 투자는 재정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를 재량 지출로 분류함
-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 인프라 투자 규모의 축소는 정부가 국가 개발을 위한 전략적 비전 제시를 어렵게 함

5. 재정 위험 관리

■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관리

- 아르헨티나에는 재정 위험을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음
- 연방재정책임위원회(CFRF)와 신설된 의회 예산국(OPC)은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로,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의 모니터링을 도움
- 의회 예산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위험, 국가 부채, 연간 예산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음
- 아르헨티나는 사회복지지출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OECD 회원국들과 같이 지출 전망의 장기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OECD는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정책 설정 및 재정 위험의 영향에 대한 자문 지원
- 재무부, 연방재정책임위원회, 의회 예산국과 같은 독립 재정기관은 최소 3~5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장기적 지속가능성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함

6.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검토

- 국가 정책 목표에 맞춰 예산을 배분하는 일환으로 아르헨티나는 점차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

하고 있으며, 이는 OECD 모범사례와 부합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예산 조정을 통해 부처 간의 협업을 돕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줌
- 예산에 대한 평가(evaluation)와 검토(review)
 - 예산처(National Budget Office)는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는 역할뿐 아니라, 성과의 향상과 예산 관리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하지만 성과보고서는 여전히 성과 위주가 아닌 예산 집행률에 의거하여 작성됨
 - 아르헨티나 성과 프레임워크의 성장을 위해선 적절한 성과지표 선정, 평가 대상 선정, 성과 평가가 필수적임
-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OECD는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재정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성과지표 및 평가 대상 선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
 - 또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와 같은 정책을 활용하여, 정책 목표와 프로그램이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음

참고자료

OECD, *Budgeting in Argentina*, 2020. 5. 19., <https://doi.org/10.1787/a7207bd1-en>, 검색 일자: 2020. 7. 7.

(작성자: 심태완 연구원)



Ⅱ. 국가계약 동향 및 연구



CONTENTS

1. 국가계약 동향
2. 국가계약 연구 동향

Ⅱ. 국가계약 동향 및 연구

1. 국가계약 동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 2020. 4. 28., 기획재정부 -

- 정부는 4월 28일(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수)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 5월 1일(금)부터 시행*
 -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수의계약 요건 확대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

〈표 1〉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구분	물품·용역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현행	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개정	1억원 이하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4. 28.

- 둘째,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대한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
-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셋째, 신속한 계약 진행을 위해 당초 경쟁입찰 유찰 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것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정령(안) 시행(5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계약절차 단축 효과 제고

■ 입찰공고 기간 단축

-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가
- 이와 함께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

■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 조치

-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2.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 5%
-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
 - (검사·검수) 14 → 7일 이내, (대금 지급) 5 → 3일 이내

참 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 이후
1.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5천만원 이하 ▶ (종합공사)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1억원 이하 ▶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8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1억원 이하 ▶ (종합공사)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2억원 이하 ▶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1.6억원 이하
2.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긴급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 급등,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
3. 유찰 수의계약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다시 유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 가능
4. 긴급입찰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공고 입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된 일정 조정, 긴급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5.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2.5%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5%
6. 법정기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검수) 14일 이내 ▶ (대금 지급) 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검수) 7일 이내 ▶ (대금 지급) 3일 이내

주: 붉은 박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기획재정부 고시)되는 사항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4. 28.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2020. 4. 28.

(요약·정리: 김창민 선임연구원)

계약제도 혁신 TF 출범(kick-off) 회의 개최

- 2020. 5. 15., 기획재정부 -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15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0. 5. 15.(금) 15:00~16:3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참석자: 28명

- (관계부처) 기재부 2차관(팀장) 등 5개 부처 실·국장(6명)
-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외 9개 공공기관 임원(10명)
-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외 6개 협회 임원(7명)
- (민간위원) 공공계약·공정거래·규제혁신·관련 산업 등 분야 전문가(5명)

- 동 TF는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을 위해 부처·공공기관·업계와 민간전문가로 구성

- 킥오프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

- 동 TF는 ①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② 공정 계약문화 정착 ③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공공기관·관련업계 등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향식(bottom-up) 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
- 또한 단편·지엽적인 제도 보완을 넘어 현장 애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제도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할 계획

- 다음으로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계획을 발표

-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공공기관·관련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접수하여, 개선 난이도와 소요기간에 따라 개선과제를 3개의 트랙(3-track)*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

* ① 우선추진 과제 ② 중점검토 과제 ③ 이해상충 과제

- 법령 개정 없이 계약예규만으로 추진 가능한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중점검토·이해상충 과제는 TF 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

- 동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하여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

*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상정 추진

참 고 우선추진 과제(5건)

① 적정 계약대가 지급 보장 및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장치 강화

- ① (적정원가 산정)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 시 시장조사 가격 중 '적정가격'을 적용*토록 명시

* 일부 기관에서 사후감사를 의식하여 물가정보지·견적서 조사가격 중 '최저가격' 적용 관행

- ② (간접비 회피 방지)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등 공기 연장 사유 발생 시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한 간접비 지급 회피 관행 제한

▶ (관련 규정) 천재지변 등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 지급 의무화

▶ (문제점)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공기 연장 사유 해소 후 신규 계약 → 간접비 회피 가능

②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 ③ (근로자 교체 요구)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근로자 교체 요구권*을 상호협의 후 교체로 완화하고, 근무태만·중과실 등 교체사유 명시

* 현행 계약예규상 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 의무

- ④ (기술·지식 이용)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로부터 취득한 기술·지식을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대가 지급의무'* 명시

* 현행 계약예규상 명시적 규정 미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사례 발생

- ⑤ (비용부담 전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분담해야 할 인지세 등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감사원) 〉

- ▶ A기관 외 38개 기관은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연대(連帶)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 ▶ B기관은 전국적으로 시설 개선공사를 하면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비용 415억원 중 301억원을 운영업체에 전가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안일환 2차관, 계약제도 혁신 TF 출범(kick-off) 회의 개최 -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전면 개편 추진 -」, 2020. 5. 15.

(요약·정리: 김창민 선임연구원)

2. 국가계약 연구 동향

공공조달 개혁(Reforming Public Procurement): 2015년 OECD 권고안 시행 점검 - OECD(2019) -

- 공공조달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중추로서, 에너지 효율성부터 공공 의료 서비스 까지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에 각국은 점점 더 공공조달을 환경 보호,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발굴 등의 정책적 목표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추세임
 - 「2015년 OECD 이사회 권고안」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사용 촉진을 위한 OECD 프레임워크로서, OECD는 동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12개의 통합원칙과 관련한 주제로 설문조사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2016)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 두 번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OECD 보고서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각국의 공공조달 체계 개혁을 시행하면서 얻은 진전, 특히 더 나은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조달의 결정적 영향력을 강조하였음
 - 본고에서는 보다 넓은 정책적 결과를 확보하는 데 전략적 공공조달의 역할과 공공조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각국의 노력에 대해 제1~2장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함

I.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이용

- 제I장에서는 부차적인 정책 목표(secondary policy objectives)를 견인하는 데 공공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기술하고 있음
 - 회원국들이 공공조달의 우선적 목표 외에 친환경 공공조달, 혁신 재화 및 서비스, 중소기업 및 여성 사업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시행하고 있는 전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
- OECD 권고안은 회원국에게 “부차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공공조달의 우선적 목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인식(균형의 원칙, 제5호)”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각 회원국은 스스로 더 전략적인 방식을 시행하고 새로운 방식을 시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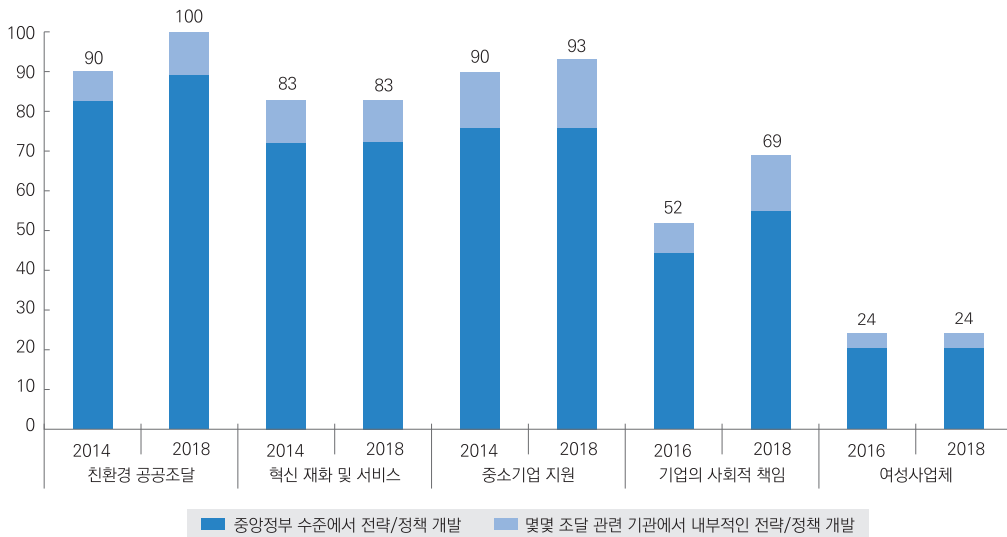
- [그림 1]을 보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친환경, 혁신 조달,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을 개발해 왔고, 2014년과 2016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친환경 조달, 중소기업 지원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상향 곡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OECD 권고안과 유사하거나 상호보완적인 다른 계획이나 정책도 시행되고 있음

- 일례로 유럽위원회(EC)는 전자조달 기구(e-procurement tools)와 같이 더 효과적인 조달과정 수립을 위해 유럽연합(EU)의 법적인 프레임워크 시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그림 1] 공공조달에서 부차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정책의 존재

(단위: %)



자료: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Reforming Public Procurement), 2018, p. 15 재인용

1.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조달 시행

■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회원국들(81%, 중앙정부 수준 69% 포함)은 혁신 재화와 서비스 조달이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있음

- ‘2015년 혁신을 위한 전략 조달에 관한 OECD 조사(2015 OECD Survey on Strategic Procurement for Innovation)’의 결과를 반영했던 한 보고서(OECD, 2017)에 따르면,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공급 측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반면, 혁신 조달은 점점 더 수요 측면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뉴질랜드의 사례에서는 선도적인 입찰자인 Westpac New Zealand와 뉴질랜드 정부를 포함하는 혁신 펀드를 조성하여 공적 부문과 Westpac 둘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안에 투자하고, 혁신 랩(labs), 해커톤(hackathon) 등 형태의 협력적 접근을 권장하고 있음
 - 2017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적인 혁신 조달을 위해 정책 기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국가 수준의 포괄적 프로그램임
 - 그중 하나는 중유럽의 PPI2Innovate project로, 공공조달혁신의 지역적 역량 강화, 혁신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PPI)에 대한 태도 변화, 지역 혁신 체계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 결합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 동 프로젝트를 통해 세 가지 주제(Smart Health, Smart Energy, Smart ICT)에 대한 PPI2Innovate 기구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를 6개 참여국의 제도적 체계에 맞춤형으로 제작하였음
 - 멕시코 또한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특히 초소·소·중기업 내의 혁신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음
- 대다수의 국가에서 혁신을 추구하면서 겪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계약 체결 기준으로 가장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 실제로 EU Directive(2014/14)는 경제적으로 가장 이익이 있는 입찰자(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MEAT)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비용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고려하고 있음
 - MEAT의 접근방식을 사용할 때에 가장 훌륭한 가격-품질 비율(the Best Price-Quality Ratio, BPQR)과 수명주기비용(the Life Cycle Cost, LCC)이 포함될 수 있고, 이는 혁신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줌
- OECD 권고안은 회원국들에게 “비용 절감을 견인하고, 공공조달과 재정정보를 통합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전 과정을 포함하는 통합된 전자조달 솔루션을 위한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ICT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음(「전자조달의 원칙」 제6항)
- OECD 조사에 따르면, 63% 이상의 회원국들이 다른 중앙정부 IT 시스템과 전자조달을 통합시키는 추세임

2. 환경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친환경 공공조달

- OECD는 2002년 일찍이 공공조달의 환경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한바 있고, 이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공공조달 전 과정에 걸쳐 환경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기를 촉구하였음
 - 친환경 공공조달 부문에서 초기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수명주기비용이며, 동 방식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hidden costs)’을 수량화하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비용에 근거한 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해줌

3.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적 결과 개선

- 공공조달은 점점 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부차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공공조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영향 평가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균형의 원칙」, 제5호)
 - 데이터의 효과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중앙조달이 공공조달을 더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평가 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됨
 - 부차적인 정책목표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확실히 인정되고 있으며, 한 예로 한 재화나 서비스가 특정 조건을 만족했다는 것을 공표하여 더 많은 소비를 촉구할 수 있음
 - 핀란드에서는 친환경 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성과 기준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하면 ‘친환경 마크(Green Label)’를 부여하여 공식적으로 친환경적 구매로 인정해 줌
 -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평가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투명성과 데이터 수집의 영역에서 EC는 유럽연합의 전자조달관보로 ‘Tenders Electronic Daily(TED)’를 제공하며, 동 관보는 EU 금액기준을 통과한 계약 공고와 낙찰 결과에 대한 의무 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4.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공공조달

- 30년간 많은 회원국들의 불평등은 연일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바, 가난한 사람들이 금융 위기를 가장 힘들게 견디는 반면 노동 생산성 강화가 늘 중산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지는 못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과 민간 부문의 리더들은 웰빙과 환경보호를 우선시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OECD 권고안은 “공공조달 기회에 대한 모든 잠재적 경쟁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 내 사업 기회 증가에 필요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공조달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법적 틀을 가질 것(「접근성의 원칙」, 제4호)”을 촉구하고 있음
 - EU의 공공조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모든 사업체에 대한 비차별성과 동등 대우임
 - 중소기업의 예를 보면 공공조달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명확한 선호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참여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에 위한 트레이닝을 시행함
 - 입찰 과정에서의 사회적 포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도 하는데, 호주의 경우 3%의 공공조달 계약을 자국 기업에 수여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칠레는 중소기업이나 여성사업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조달 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복잡한 공공조달 체계와 과정이 중소기업에 가장 큰 장애물인 만큼, 각국은 계약 과정을 단순화하거나 전자조달 방식을 사용하거나 계약을 할당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중임

5.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공급망(GSC) 보장

-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인권이나 노동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으므로, OECD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의 다국적 기업이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촉구함
 - 폴란드의 경우 부차적인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행 시 보호요양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함
 - 노르웨이의 경우 법적 체계를 통해 낙찰자 선정과 기술 명세서 공개 시 공공 조달 과정에서 인권을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업무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적 계약에서 지불 및 노동 조건에 대한 규칙 또한 준비해 왔음

6. 우선적·부차적 정책 목표 간 균형 고려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은 조달 기능을 통해 다양한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표 1〉 전략적 조달계획의 우선순위화

우선순위화 방식	국가
계약 당국의 결정	독일, 뉴질랜드, 폴란드
입법 시 부차적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우선순위 설정	헝가리, 멕시코
정책으로 우선적 목표 설정	아이슬란드, 포르투갈(추후에)
연간 우선순위·실행 계획	한국
개별 수요기관에 따라 케이스별로 고려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모든 계획을 동등하게 추진	그리스, 스웨덴
사회적 목표와 일치하는 우선순위화	슬로바키아

자료: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Reforming Public Procurement)*, 2018, p. 30 재인용하여 저자 수정

- 뉴질랜드의 경우, 하향식 접근 방식이 사용되어 최근 공공조달 개혁 프로그램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더 넓은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결과를 얻는 데 지원하고 있음
 - 조달 활동을 통해 유도할 수 있는 네 가지 우선적 결과(뉴질랜드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내수 건설 분야 인력 규모 및 스킬 강화와 고용기회 부여, 고용 기준 개선, 산업 폐기물 감소와 완전 무탄소 배출 경제 달성)를 보여주고 있음
- 몇몇 국가들은 개혁의 일부라는 정책목표의 관점에서 조달의 우선순위를 정함
 - 스웨덴에서는 개혁 프로그램이 정책목표의 윤곽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급자와 조달자 간 공동 참여를 위한 파트너십을 정립하고자 함
 - 노르웨이의 경우, 2019년 의회에 제출된 「공공조달백서」에 GPP, 혁신, 대금 지불 및 직업 환경 및 인권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었음
-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몇몇 국가는 공공조달의 우선적 목표와 부차적 목표의 균형을 추구함
 - 덴마크는 수요자의 니즈와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바를 비교하는 철저한 연구를 통해 우선적 정책 목표를 정의하였고, 공공조달의 목표로는 비용을 감소하면서 품질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설정하였음
 - 이스라엘의 경우, 정책목표들을 통합하는 비용을 예측하여 조달 과정에서 중점을 둘 부분을 결정하는 ‘민감성 분석’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우선적 목표와 부차적 목표 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몇몇 국가는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 입법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음
 - 헝가리는 법 조문을 통해 부분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와 사회적 고려를 촉진하고자 하였음
 - 코스타리카는 지속적으로 공공조달의 우선적 목표와 부차적 목표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며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음

II. 미래에 대한 투자: 공공조달의 역량 강화

- 제II장에서는 회원국이 투자 가치의 달성(value for money)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공공조달 인력을 개발하는 수준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공공조달 인력의 역량 부족이 효과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저해하고 있는바, 본 분석은 역량 부족 상황에서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장은 공공조달 인증과 전문화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회원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증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음

- OECD 권고안은 회원국에게 “효과적인 투자 가치의 달성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능력을 갖춘 공공조달 인력을 개발할 것(「역량의 원칙」, 제9호)”을 촉구하고 있음
 - 공공조달시스템의 가장 대표적 결함은 조달 인력의 역량(의무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기반의 능력)과 수용력(가진 행정·금융·인프라·인력 자원에 기초한 능력)의 부족임
 - 2017년 OECD 조사에 의하면 협상,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관리 등의 기술과 능력이 전략 조달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수적임
 - 벨기에, 캐나다, 한국, 미국과 같은 OECD 회원국에서는 조직의 수요에 맞는 직원 채용·훈련·개발·인수인계 등 다양한 활동에 이러한 역량이 통합되었음

1. 공공조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미래계획 지원 역량 평가

- MAPS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공공조달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전략적 시스템의 요건과 역량 간 간극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최근 몇 년간 회원국들은 개혁 활동을 지원하는데 MAPS 평가를 이용해 왔음
 - 노르웨이는 2017년 MAPS 평가를 통해 10년의 국가 개혁 어젠다에 영향을 주었음
 - <표 2>에 제시된 뉴질랜드의 공공조달 역량 지수(PCI)는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자기평가 도구로, 공공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축적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표 2〉 뉴질랜드의 공공조달 역량 지수(Procurement Capacity Index, PCI)

전 조달 과정에 대해 11가지 조달 역량 평가
상업적 결과에 대한 전략적 계획
정부기관의 핵심 결과 영역과의 일관성
결과를 견인하는 상업적 리더십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조달 기능 조화
조달 기능의 거버넌스와 조직
정책 및 절차와의 조화
구매 및 협업
공급자 관계 관리
인력관리 및 기술 개발
지식 및 실적 관리
기술적 절차 및 도구 사용

자료: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Reforming Public Procurement), 2018, p. 39, Box.2.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 역량과 수용력이 공공조달 거버넌스와 펀딩 모델에 미치는 영향

- 공공조달 거버넌스는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기술 수준이 적용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중앙집권적 모델은 보통 프레임워크 협약을 통해 구매를 전담하는 중앙조달기구(이하 ‘CPB’)를 두고 있지만, 개별 수요기관과 중앙 기관의 수요 사이의 긴장(tension)이 특히 펀딩 부문에 있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더 복잡한 공공조달 프로젝트일수록, 펀딩을 총괄하는 중앙집권적 기능을 가진 기관일수록, 기술을 가진 숙련된 공공조달 전문가가 필요함
 - 핀란드의 경우, 비영리 기관인 Hansel이 협약을 통한 구매 가치에 근거하여 공급자들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을 통해 펀딩하며, 계약 가치의 1.5%로 제한됨

3. 공공조달의 수용력과 역량개발을 위한 올바른 전략, 도구, 지침의 이용

- 전문적인 공공조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수용력과 역량 한계 수준과 같은 요소에 따라 특수한 수단이 필요함. 역량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스템에 기초가 될 수 있음
 - OECD는 불가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조달 과정의 특정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커리큘럼 등을 포함하는 교육 계획 및 제안서를 제공하였음
 - 2018년 OECD 조사에 따르면, 공공조달 전문가들의 수용력을 개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전략

과 계획을 제시하였고, 주기적인 부서평가를 통해 각 부서가 공공조달 수용력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확인하고 있음

- OECD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공공조달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 트레이닝 실행 계획의 개발을 원조하였음
 - 질문표(questionnaire)는 기존 트레이닝 제공, 그 맥락과 구조에 대해 트레이너와 트레이니의 관점 모두에서 구조화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4. 역량 기준 평가와 수요 충족을 위한 역량 모델 활용

■ 공공조달 전문가와 조직에 필요한 능력(competency)은 조달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정의되며, 많은 국가에서는 단순한 조달기술보다는 더 확대된 상업적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EC는 구매자(buyer)가 필요한 기술, 지식, 청렴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조달을 위한 유럽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국가 수준의 전문화 정책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영국은 전체적인 공적 영역에서 상업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상업적 능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Commercial Skills and Competency Framework for Developing and Practitioner Levels)를 활용하고 있음
 - 동 프레임워크는 모든 정부 부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업 주기의 세 가지 핵심 요소(상용화 이전(pre-market), 소싱(sourcing), 계약 및 공급자 관리)를 다루고 있음
- 2018년 스코틀랜드(영국)는 공공조달 인력과 관련된 트레이닝과 개발을 규정하기 위해 자기 평가에 기반한 뉴 공공조달 능력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음
 - 공인 조달공급 협회(Chartered Institute of Procurement and Supply, CIPS)의 글로벌 표준과 같은 맥락에서, 조달 직원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자기 평가하고, 경력과 자기개발을 계획하도록 함

5. 점차 증대되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성격을 지원하기 위한 트레이닝

■ 공공조달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공공서비스에서 단순한 행정적 기능이 아닌 전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며, 전략적 조달로서의 변화는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게 되었음

- 2018년 OECD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직업 트레이닝, 교육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레이닝이 단순히 소싱이나 계약 관리와 같은 조달의 핵심 주제뿐만 아니라 혁신 조달, 친환경 조달과 같은 영역도 다루고 있음

- 지역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규정하고 활용하는 트레이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
 - OECD가 트레이너의 트레이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불가리아의 경우, 그 프로그램이 공공조달 영역에서 지역 전문가를 트레이닝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음
 - 멕시코에서 OECD는 트레이너의 역량 개발을 진행하고 공공조달 영역에서 담합 입찰에 대처하기 위한 트레이닝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 캐나다에서는 공공조달 전문가로 규정된 모든 직원은 거버넌스 명령(directive)에서 제시된 트레이닝 커리큘럼을 따라야 함

6. 인증(certification)을 통한 공공조달의 전문화 인정

- 공공조달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공공조달을 별도의 기능이나 전문 직종으로 인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몇몇 인증 프로그램은 공공조달 인력이 그 직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하고 역량 모델의 개발로 연계될 수 있음
 -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 조달과 자원관리 커뮤니티(Materiel Management Communities)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커뮤니티에 대한 전문적 인식을 증대시키고 실무자의 달성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
 - 미국은 구매자와 구매 매니저의 전문 협회인 American Purchasing Society(APS)를 운영하고 있음
 - 멕시코에서는 연방 전기 위원단(the Federal Electricity Commission)이 시험을 통해 구매 에이전트(buyer agents)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7. 수용력과 역량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달 인력의 전문화

- 공공조달 성과의 질(quality)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각 요소를 담당하는 개별 인력의 능력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된다고 할 수 있음
 - 전문적인 공공조달자(public procurer)를 정의·권장하는 몇몇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함
 - 공공조달 인력의 전문화는 신규 인력을 유입하고 기존 인력을 유지하여 역량 차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특수 핵심 인력과 진로를 형성하는 것은 계획적인 트레이닝이나 지속적인 교육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함
 - 윤리, 서비스 복무기간에서의 특수 의무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발, 관료제적 압박에 대한

보호, 특별 금융 보상, 안정적 임금 등과 같은 특수한 권리가 진로의 지속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함

- 현재 개발되고 있는 OECD MAPS 6개의 추가 모듈 중 하나는 공공조달 전문성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지표는 공공조달의 전문화가 어떤 것을 포괄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공공조달 인력의 전문화와 권한 부여를 위한 주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타깃 트레이닝을 통해 역량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전문적 조달 역량을 지원함

- 민간과 공공부문 조달 전문가들이 함께 배운다는 협력적 접근 방식은 두 영역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조달 인력의 기술과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음
 - 페루와 호주에서, 조달 인력의 전문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지식을 공유하도록 설계된 협력 계획이 있음
 - 페루에서는 중앙조달 부처와 대학, 기타기관 간의 전략적 동맹을 개발하여, 각 전략적 동맹이 제공하는 트레이닝의 개수와 질이 모니터링되었음
 - 호주 재무부는 공급자와 기관을 위해 조달 과정을 능률화·간소화하고자 계약 문서의 표준화 강화, 조달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공공조달 교육기관 개선 등의 협력을 진행 중임
 - 벨기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2014년 지식센터인 FIDO를 설립하였고, FIDO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가이드를 업데이트하고 수명주기비용과 같은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참고문헌

- OECD,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Good Practices and Strategies*,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2017, <https://dx.doi.org/10.1787/9789264265820-en>, 검색일자: 2020. 8. 5.
- _____,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2015 OECD Recommendation,”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2019, <https://doi.org/10.1787/1de41738-en>, 검색일자: 2020. 8. 5.

(작성자: 이혜미 연구원)

◆ 편집

장우현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편집총괄)
봉재연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실무총괄)
김창민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
임소영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
박정민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심태완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혜미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 2020년 가을(Vol. 7 No. 3) |

2020년 9월 24일 인쇄
2020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표), <http://www.kipf.re.kr>
등 록 세종, 바00027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SN 2635-712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